



Vol.70 2020. Fall Trade Remedy Review
무역구제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지적권 침해 조사 및 정책 동향

무역구제

[특집] 중국의 지식재산권 공적 감정체계 활용이 주는 시사점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시사점

[칼럼] 반덤핑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고찰

[정책연구] 반덤핑조사 종료재심(3차 이상)시 판정사례 연구
덤핑방지조치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무역위원회 동향

- 무역위원회 의결사항('20.7~'20.8월)
- 최근 판정사례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대외활동 동향('20.7~9월)
반덤핑조치 현장 방문
2020 하계 학술대회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예정)

해외 무역구제 동향

- 외국의 對한국 무역구제 조사/조치 동향
- 해외 주요국의 무역구제 동향



무역구제 계간지 인사말씀



무역위원회 위원장 **장 승 화**

무역구제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와 태풍에도 열매가 맺고 곡식이 여무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2020 무역구제지 가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 신제품 출현이 가속화되는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이번 가을호에서는 특집 “중국의 지식재산권 공적 감정체계 활용이 주는 시사점”,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시사점”을 통해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불공정무역행위 제도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더불어 컬럼 “반덤핑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고찰” 및 무역위원회의 최근 조사·판정 사례, 해외 수입규제 동향을 정리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무역구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제도를 연구하는 학계 관계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01	특집	7
	1. 중국의 지식재산권 공적 감정체계 활용이 주는 시사점	9
	2.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시사점	17
02	칼럼	25
	1. 반덤핑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고찰	27
03	정책연구	33
	1. 반덤핑조사 종료재심(3차 이상)시 판정사례 연구	35
	2. 덤핑방지조치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53
04	무역위원회 동향	63
	1. 무역위원회 의결사항('20.7~'20.8월)	64
	2. 최근 판정사례	73
	1)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3. 대외활동 동향('20.7~9월)	78
	1) 반덤핑조치 현장 방문	
	2) 2020 하계 학술대회	
	3)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예정)	
05	해외 무역구제 동향	81
	1. 외국의 對한국 무역구제 조사/조치 동향	82
	2. 해외 주요국의 무역구제 동향	89
	부록	97
	1. 무역구제 통계	98
	2. 전세계 무역구제 현황	104
	3. 對韓 해외 수입규제 현황	106
	4. 무역구제 이용방법	107

01

특집기획

- 1. 중국의 지식재산권 공적 감정체계 9
활용이 주는 시사점
- 2.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무역행위 17
조사 절차에 관한 시사점



특집

중국의 지식재산권 공적 감정체계 활용이 주는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시열

1. 중국 레고 모조품 사건과 판권감정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가운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특히 소위 ‘짝퉁’ 제품(이하, ‘위조상품’)의 판매 행위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오리지널이 오리지널일 수 있는 것은 위조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농담처럼 이 문제는 현실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크다. 이 가운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유발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외국 기업 상품의 위조제품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의 증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노력 과시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다.

덴마크 장난감 제조업체 레고(LEGO)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인기로 인하여 중국에서 위조상품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닌텐도와 레고가 함께 출시한 ‘슈퍼마리오 레고’가 출시된 지 20여일 만에 중국에서 이를 그대로 본 따서 만든 ‘모험도 레고’가 판매되기도 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레고 제품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러핀(Lepin)사(社) 대표 리(Li)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9000만 위안(약 156억 원 상당)이 부과(공범 8명은 각각 징역 3년 ~ 4년6개월 선고)된 사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개선 움직임으로 보아 관심을 받고 있다.

러핀(Lepin)사(社) 대표 리(Li)와 공범 8명은 2015년부터 2019년 4월 까지 덴마크 레고 본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난감 도면 복제, 완구 제작 등을 함으로써 47개 시리즈(634개 모델)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시중에 판매해왔다. 이들 회사명 ‘러핀(樂拼)’은 중국어로 레고를 표기한 ‘리가오(樂高)’에서 한 글자만 바꾼 것 이다. 러핀은 레고의 정식 제품과 동일한 포장, 디자인 및

색상을 반영하여 모조 제품을 생산(총 425만 박스) 및 판매하여 왔다. 상하이 경찰은 2019년 4월 23일 리(Li)가 임대한 공장에서 약 3,150만 위안 상당의 장난감 제품 603,875개, 레고 장난감을 복제하는데 사용한 사출금형(88개)과 조립용 부품(68개), 포장상자, 설명서 등을 압수하였다. 상하이 제3중급인민법원은 모방 장난감이 시장에 공급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기업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레고를 모방하여 위조상품을 제작 및 판매한 리(Li)와 그 공범에 대하여 상기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범죄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3억3000만 위안, 573억원)이 리(Li) 등에게 중형이 부여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과거 중국에서 높은 손해액 인정이 다소 어려운 편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때, 이와 같은 판결을 위한 전제(손해액의 산정)를 마련한 중국판권보호중심의 판권감정위원회에 대하여 특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시 적절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꽤 오랜 기간 동안 실체적·제도적 고민을 계속 하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의 사례에서와 같이 적정 손해액 산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사법감정 체계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중국은 지식재산권 분야 소송에서 공적인 감정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제1차 법원개혁요강(1999, 人民法院五年改革纲要)에서 사법감정 체계의 확장 계획을 명시한 이후, 제2차 법원개혁요강(2005, 人民法院第二個五年改革綱要)을 통하여 사법감정(司法鑑定) 제도라는 공적감정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였다.¹⁾ 사법감정은 2007년 10월 시행된 「사법감정절차통칙」에 따르는 절차로, 사법감정인이 사법기관 등의 의뢰로 법률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이용하여 소송 등의 활동에 있어서 전문적인 감별과 판정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²⁾

2014년에는 북경 및 상해 등에서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되면서 지식재산권 사법감정센터³⁾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중대한 분쟁의 경우 사법감정을 이용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한다.⁴⁾

각 지방에서 설치한 지식재산권 사법감정센터 이외에 ‘중국판권보호중심’ 등과 같은 전문적인 공공기관⁵⁾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감정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표적인 사법감정 기구인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에서 설치한 지식재산권사법감정소(知识产权司法鉴定所, CSIP)는 특허사안, 저작권 및 판권사안, 상표사안, 영업비밀사안 등에 대해 사법감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⁶⁾ 여기서 담당하는 사법감정 사항은 i)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선행권리 및 피침해대상과 유사한지 여부, ii) 특허권에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 인정여부, iii) 이미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iv)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간 동일성 여부, v)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범위의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⁷⁾

약 10년 전 무렵만 하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통하여 중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손해 규모에 관한 평가 제도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적절한 손해액 산정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사법감정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기구를 활용하는 쪽으로 사법정책을 이끌어온 것으로 보인다.⁹⁾ 그 결과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중국의 태도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3) <http://baike.baidu.com/link?url=q8lpMkoFJ3JtC3KMnKH6e3qnjXp6mjocTe3YJzYQilYHxJdPJhHWxaD3lj1gPpaDGwM81lUx-uH29JKWwva>.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중국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사법감정센터 설립”, 2015-04호, 2015.

5) 电子一所知识产权司法鉴定中心(工信部), 知识产权司法鉴定所(工信部), 洲科技知识产权司法鉴定中心(北京), 重庆邮电大学司法鉴定中心, 西南政法大学司法鉴定中心 등이 있음.

6) <http://www.csipsjd.org.cn> 참조.

7) 김시열, 「산업재산권 분야 공적감정제도 도입의 주요문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층분석, 2016, 8면을 인용.

8) 최재식,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감정평가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222면.

9) 최재식, 상계보고서, 223면.

1) 조영남, 「중국의 사법제도 개혁 연구 - 법원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48-60면 참조.

2) 최재식,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감정평가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218면.

3. 해외의 유관 제도

지식재산권 분쟁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소송절차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 마스터(master) 제도 등이 있으나, 이들 제도는 그 내용과 역할 상 중국의 사법감정제도 등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중국의 사법감정제도와 유사한 면을 찾아볼 수 있는 제도로 법정조언자 제도(Amicus Curiae)를 들 수 있다.

법정조언자는 라틴어로 '법정의 친구(friend of court)'를 의미하며,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소송물에 큰 이익을 가지고 있어 본인의 요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해당 사건에 법정조언자의 의견을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¹⁰⁾ 미국에서 처음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한 것은 1821년 Green v. Biddle 사건¹¹⁾을 계기로 한다. 이 사건은 켄터키 주 및 당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조언자가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법정조언자 시행 초기에는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이 주로 법정조언자로 활동하였고, 1930년대 이후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이익집단, 전문가단체 등으로 활동 주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조언자 제도는 연방대법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¹²⁾ 최근 법정조언자 활용의 절대적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소송사건에서 의견서 제출을 활용한 사건의 비율은 과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단위 사건 당 법정조언자 의견서의 양적 활용은 줄었지만, 법정조언자 의견서가 활용되는 사건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흐름은 대부분의 연방대법원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점, 법원 역시 이러한 의견서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법정조언자는 원칙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역할에 제한이 있다. 즉, 소송참가인이 아니며 그들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보조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된다.¹³⁾

법정조언자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소송과정에서 조언 및 정보 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분야에 대한 법원의 이해 능력 향상,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 참여 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된다.¹⁴⁾ 특히 전문분야에서는 법원이 사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법정조언자가 사실상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¹⁵⁾ 다만, 법정조언자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점은 법정조언자가 특정한 입장으로 기울어져 왜곡된 내용을 기초로 하거나¹⁶⁾ 선택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맞추는 등¹⁷⁾의 행위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 아울러 결국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보니 '법정의 친구'가 아닌 '예산있는 자의 친구'라는 비판도 있다.¹⁸⁾

4.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는 감정절차가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다. 이때 자연인인 감정인에 감정을 요청하는 것 보다는 공공기관 등이 감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촉탁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법 제341조 제1항),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179조의2 제1항). 그 외 전문심리위원 제도, 기술심리관 제도 등이 소송법의 체계 아래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으나, 중국의 사법감정제도와 대응하여 살펴보기에는 그 내용상 적절히 대응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자세한 소개를 생략한다.

지식재산권 법체계 내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감정제도가 있다. 저작권법은 제119조에서

10) Black's Law Dictionary(8th ed), 2004, 263면.

11) Green v. Biddle, 21 U.S. 1 (1821); Helen A. Anderson, 상계논문(2015), 368-369면.

12) 김지영,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제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3, 20면.

13) 김진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제도와 그 운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02면.

14) 김시열, "법정조언자 제도와 소프트웨어감정 제도의 비교 연구",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14권2호, 2018, 27-29면.

15) 김진한, 전계논문, 200-201면.

16) Michael Rustad and Thomas Koenig, "The Supreme Court and Junk Social Science: Selective Distortion in Amicus Briefs", 72 N.C. L. Rev.91, 1993, 100, 158면.

17) Michael Rustad and Thomas Koenig, 상계논문, 100면.

18) S. Chandra MOHAN, "The Amicus Curiae : Friends No More?", Singapore Journal of Legal Studies, Dec. 2010, 22-23면.

저작권 감정제도를 규정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6조에 신설된 것으로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6조가 저작권법 제119조로 통합된 것이다.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41조 및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와 연결되는 것으로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 진행 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저작권법 제119조에 기한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이 제도는 앞서 살펴본 민사·형사소송법의 감정촉탁절차를 활용하는 것인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공공기관을 촉탁기관으로 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 외에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법 제119조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감정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2017년 1월 18일자 발명진흥법 개정(안)(정부제안) 초안은 저작권법 제119조를 참고하여 법원,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판, 수사 또는 법령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 초안 제55조의4). 다만 이 초안의 내용은 손해배상액 산정 가치평가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범주가 축소·변경되었다. 이에 (안)제55조의4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요청된 손해액 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대안반영 법률(의안번호 2024017)에서는 감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별도의 법적 규범이 없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받은 공공기관 등에서 감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지식재산권, 한국변리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감정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5. 시사점 : 우리도 공적 감정체계의 활성화가 필요한가?

당사자주의를 기본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재판 절차에서는 공방이 이루어지는 쟁점에 대한 입증은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감정, 특히 법관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소송감정은 직권주의적 성질이 있는 예외라 보여진다. 이는 소송감정의 활용이 당사자

주장의 입증에 관한 점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사안의 판단을 위하여 사실의 확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의 조력을 위한 것이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판 절차에서 감정이 점차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전문소송의 증가에서 원인을 찾는다.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다툼의 대상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일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인 법관의 판단을 위한 전제, 즉 사실의 확정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사례와 미국의 사례는 확연히 구별됨을 알 수 있다. 국가 및 공공영역이 중심이 되어 재판부에 전문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과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동일한 문제에 서로 상이한 접근법을 갖는다. 중국의 사례가 법원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미국의 사례가 법원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송감정 절차를 통하여 직접 법관의 전문지식을 조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굳이 접근법의 유형을 본다면 우리 역시 소송감정 절차를 통하여 재판관이 직접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중국의 접근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제도적 배경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공적 감정기구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공적기관에 의한 감정체계의 필요성은 종종 논의되어 왔다. 권리침해 등에 대한 판단 이외에 특히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공적 감정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이 깊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재판 실무에서 가장 염려하게 되는 점은 공정성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여타의 손해액 산정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다종(多種)의 분야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는 특징을 갖는다. 소송법상 감정인의 전제인 개인성에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 즉, 이를 위한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충분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감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 조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사법감정 체계를 공적 조직을 통하여 구축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왔다. 지금까지 약 10년 정도의 제도 운영을 통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손해액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소송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보이는 최근의 태도는 이러한 점에서 기인한 자신감은 아닐까 생각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판 절차 가운데 공적인 감정의 필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같이 공적

기관에 의한 소송감정 수행 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물론 지식재산권의 전문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전문심리위원, 기술심리관 및 감정인 제도 등을 확대하는 등 나름의 대응을 하여 왔으나, 점차 개인인 전문가에 의한 조력의 한계가 높아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입법 및 정책적으로 깊이 고민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생각한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감정을 수행한다면, 미국의 사례에서 비판을 받아온 비용의 문제, 즉 과도한 소송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재판결과를 받게 될 수 있는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특징이다. 더군다나 전문소송에서의 가장 문제인 공정성 담보 문제에 있어서는 공적 감정체계의 구축은 매우 효과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법관 입장에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감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어서 법관의 역량만으로 각 감정에 대한 공정성을 직접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매우 효율적인 재판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지식재산권 분야의 분쟁이라 일반화하여 말하고는 있으나 모든 사안이 각기 다른 정도의 조력을 요구하게 되므로 기존의 재판관 조력 제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기존의 제도 하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법관에게 적절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인 감정체계가 보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1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제도는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모델이라 생각한다.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는 그 적절한 산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오던 분야이다. 적절한 산정이라 표현하지만, 그 기저에는 대상 지식재산권의 가치나 손해규모가 충분히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앞서 본 최근 중국의 행보가 관심 깊게 보여 진다.

특집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변호사

최 재 식

I.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한국이 아닌 제3국인 미국에서 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의아해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른 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언론 보도¹⁾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 침해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증거 조사시 실제적 진실을 가리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사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역시 유사한 논점이 있다.

한편,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증거 조사 제도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판결을 해야 하고 요증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때에 법원은 어느 한 당사자의 주장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바, 이를 소송상 증명책임이라고 한다. 당사자는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²⁾ 그런데 특히 침해 관련 분쟁에서는 그 특성상 침해 여부에 대한 증거가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편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경우 피해를 당한 원고는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 중심의 증거에는 비교적

1)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시동... 특허침해 입증 길 열리나" (디지털타임스, 2020.6.21.) 등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제448-449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그 피해를 야기한 상대방 피고의 가해행위 관련 증거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술 과정에서 마취 후 의식을 잃었다가 마취에서 깨어나 비로소 의식을 되찾은 환자는 수술 후 자기의 신체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가 자기를 집도한 의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알아내기 매우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떠올려볼 수도 있다. 이처럼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이나 특허법은 개정을 시도하면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2016년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 및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던 바 있었는데,³⁾ 이는 소송자료에 대한 양 당사자의 대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소송절차를 실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증거수집에 관하여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이 아닌 특허 관련 분쟁에서만이라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특허법 상의 특별규정이 2016년 3월 29일 자 법률 제14112호 특허법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아래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위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그 조사 절차를 간략히 정리한 뒤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 분야 대표적인 특허권 관련한 소송에서 증거조사 관련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참고하려는 다른 분야의 증거조사 관련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 뒤 이 중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의의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개요

불공정무역행위란 공정한 수출입질서를 교란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국가신용도를 하락시키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사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수입·판매하는 행위 또는 수출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품질 등 허위·과장표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수출입에 있어 계약사항 미이행 및 계약과 다른 물품의 수출입 등 대외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나뉜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라면 누구든지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예외적인 연장 사유가 없다면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로서는 시급한 사안에서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제도 개선 필요성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조사신청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기각 판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2007. 8. 14. 선고한 2007구합825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달리 다룰 방법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해당 판결에서도 그 판정 자체로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본안전 항변이 문제가 되었다. 판결은 여러 관점에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특히 특허권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여 그 절차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사법적 구제가 가능함에도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이와 별도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자 구조기능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구조기능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서는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판단의 근거는 증거의 신속한 조사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ITC가 독립적, 초당적 준사법 기관으로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무역관련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고, 수입이 자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판단하며, 특허, 상표 등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를

3) 2016.2.28. 이상민 의원 등 10인에 의해 의안번호 제1918569호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본 법률안은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당사자의 절차선택권을 다변화하며 불필요한 소송의 예방 및 심리충실화를 도모”하는 것 및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중에 따른 사실심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심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제안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판정하고 행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데, 미국 관세법 §337⁴⁾에 따라 미국 영토로의 수입제품 및 그 후속판매에 대한 불공정경쟁행위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침해 금지대상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다. ITC의 조사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증거심리가 요구되며 그 심리절차는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주재한다. 증거심리는 증거개시절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연방민사소송절차규정을 따른다. 당사자는 행정판사에게 증거개시절차의 이행 강제 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행정판사의 증거수집절차 관련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입증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우리나라 특허법 등 특별법에서 증거조사를 위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절차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구제라는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를 포함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사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타 제도의 조사 절차 개선 노력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타 제도에서 조사 절차에서의 실효성 강화 노력

1) 특허법

앞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2016년 3월 개정된 특허법은 증거수집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었다. 특허법 개정의 이유 내지 취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며,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자인 피고 측에 편재하는 증거에 대해 특허권자인 원고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원고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시키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⁵⁾ 이때에 새롭게 도입된 특별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⁶⁾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⁷⁾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⁸⁾
-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⁹⁾
-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¹⁰⁾

6) 특허법 제132조 제1항.

7) 특허법 제132조 제2항.

8) 특허법 제132조 제3항.

9) 특허법 제132조 제4항.

10) 특허법 제132조 제5항.

4) §337 of Tariff Act of 1930; 19 U.S.C. Customs Duties, Chapter 4, §1337 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

5) 개정이유서 참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455&chrClsCd=010202&lsRvsGubun=all>, 2020.9.11. 최종접속.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발생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국회 정무위원회, '20.7.)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하여 사업자의 범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용이한 손해 발생·인과관계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특허법을 제외하고는 “자료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에서 나아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까지 입증간주하는 입법례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II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에서의 증거 조사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법률적 제도 미비를 이유로 해외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도 자국 기업 보호에 유리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에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할

시점이다. 실제적 진실에 가급적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로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에서도 조사 및 의견청취 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 출석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당사자 그리고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사에 불응했을 때 얻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개정된 특허법 또는 개정을 추진중인 하도급법 등을 참고하여 불공정무역조사법 상에서도 조사 불응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02 칼럼

반덤핑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고찰



칼럼

반덤핑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고찰

영남대 무역학부

노재연

국제무역에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운송비용 혹은 관세 등으로 인해 낮은 가격의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수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차별 정책이 가능하다. 수출기업이 자국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 혹은 평균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외국시장에 판매하는 덤핑은 일종의 가격차별 정책이다.¹⁾ 이러한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급 기업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독점력이 있어야 하며, 분리된 시장 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이하야 시장간 차별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은 국내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여 가격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이윤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수출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수출가격과 한계비용 차이만큼의 이윤을 얻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덤핑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덤핑행위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의 위험이 존재할 경우 덤핑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여 덤핑마진을 상쇄하는 반덤핑관세를 허용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는 덤핑된 물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덤핑 제소는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기 이전 외국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수출 가격을 올려 관세를 줄이거나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 수출기업들의 자발적 가격인상은 수입국의 교역조건 손실을 유발하며, 반덤핑관세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국내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자국 소비자들이 잃게 되는 손실이 커서 순손실 규모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자중손실보다 클 수 있다.

1) 가격차별정책으로서의 덤핑이외에도 계절적 요인, 경기침체, 수요변화 등으로 공급과잉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나 독점적 지위를 누리 기 위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 사례의 경우 최종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반덤핑 조사개시 자체만으로도 조사대상 품목의 수입이 위축되는 조사효과(investigation effect)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예비판정 단계에서 예비공정판정을 받은 수출기업들은 덤핑조사가 종결되기까지 수출 가격을 인상시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²⁾ 반덤핑관세 부과라는 위협만으로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관세 부과라는 비용부담보다는 수출가격 인상을 통한 교역조건 개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편, 최종 판정에 따른 반덤핑관세 부과는 대상 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국내 순 후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의 부가적인 무역비용 증가 및 수입국내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로 수출국 후생도 감소시킨다. 기존 연구에서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후생의 감소를 20~40억 달러로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후생감소는 1993년 당시 미국 무역량이 약 5% 감소된 것과 동일한 효과로 추정된다.³⁾ 또한 지난 10년간 세계 무역구제조치의 강화는 한국의 후생을 0.167% 감소시켰는데, 이는 수출가격 인상에 따른 한국의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액이 0.254%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⁴⁾

반덤핑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수입국 A가 반덤핑관세를 자국 수출품에 부과하면, 자국 수출기업의 수입국 A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Trade Destruction' 및 타국 수출기업의 수입국 A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Trade Diversion'은 직접효과에 해당한다. 반대로 수입국 A가 반덤핑관세를 자국 수출품에 부과하면 자국 수출기업의 제3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Trade Deflection' 및 수입국 A가 반덤핑관세를 제3국에 부과하면 자국의 수출기업의 제3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Trade Depression'은 간접효과에 해당한다. 실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조치가 일본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간접효과들이 발생함이 증명되었고, 이런 간접효과로 인해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는 제3국으로 수출증가를 야기하여 제3국으로 하여금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할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⁵⁾ 한편 반덤핑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직접효과로서

미국의 경우 1980년에서 1988년까지의 반덤핑 조치로 인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전환이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를 초과하여 발생하므로, 대상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반덤핑 관세 조치의 산업보호효과가 없다고 분석되었다.⁶⁾ 그러나 1990년에서 1996년 미국의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반덤핑조치의 산업보호효과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⁷⁾

반덤핑 관세 부과가 무역에 미치는 또 다른 직접 효과로 'Chilling Effect'가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가 덤핑 대상물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재화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의미하며, 산업별 차이는 있으나 반덤핑 관세는 대상 수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최근 반덤핑관세 사용이 증가한 브라질, 인도, 멕시코, 대만, 터키 등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무역자유화 인해 증가된 무역증가분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실제 인도는 1990년 이후 관세개혁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을 반덤핑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⁹⁾ 이와 같이 최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세인하를 경험한 개도국의 반덤핑관세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간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개도국이 또 다른 개도국에 대해 부과하는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South-South protectionism).¹⁰⁾

반덤핑 관세는 대상 국가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덤핑관세부과로 수입국내 텅 생산적인 기업에서 더 생산적인 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도 계속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 및 마크업(markups)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다면 물리적 측면의 생산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¹¹⁾ 한편, 반덤핑관세 조치는 수출국내 대상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총생산성도 감소시키며¹²⁾, 생산성이 낮은 수출기업들

2) Staiger, R. W. and F. A. Wolak (1994), "Measuring Industry Specific Protection: Antidumping in the United States."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Microeconomics

3) Gallaway, M., B. A. Blonigen, and J. Flynn (1999), "Welfare Cost of the U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9(2), p211-244.

4) 이규엽 외 (2017),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7-05.

5) Bown, C. P. and M. A. Crowley (2007), "Trade deflection and trade depres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2, p176-201.

6) Prusa, T. J. (1997), 'The trade effects of U.S. antidumping actions,' in The Effects of US. Trade Protection and Promotion Policies, ed. Robert C. Feenstr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91-213.

7) 이흥구 (2006), "반덤핑조치의 수입대체 및 수입전환 효과: 미국의 사례", 경제학연구, 54(2)

8) Vandenbussche, H. and M. Zandardi (2010), "The chilling trade effects of antidumping prolifer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4, p760-777.

9) Bown C. P. and P. Tovar (2011), "Trade Liberalization, antidumping, and safeguards: Evidence from india's tariff reform",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6, p115-125.

10) Bown, C. P. (2013), "Emerging Economies and the Emergence of South-South Protectionism", Journal of World Trade 47.

11) Peirce, J. R., (2011), "Plant-level responses to antidumping duties: Evidence from U.S. manufac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5, p222-233.

12) Chandra, P. and C. Hong (2013), "Anti-dumping Duties and their Impact on Exporters: Firm Level Evidence from China", World Development, 51, p169-186.

퇴출시킴으로서 수출기업의 수(extensive margin)도 감소시킨다. 실제로 2000년에서 2006년에 미국이 중국 수출기업에게 부과한 반덤핑관세는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기업들을 퇴출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살아남은 중국의 수출기업들과 경쟁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¹³⁾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수입국입장에서는 덤핑이 존재하는 경우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보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순 후생이 더 크다. 또한 비록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 및 그에 따른 수입 감소로 수입국내 소비자 후생은 감소할 수 있겠으나, 수입전환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순수입을 감소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실질적으로 반덤핑관세를 사용할 유인이 생긴다. 비록 장기적으로 생산비 인상 및 국내기업의 생산성 악화 등으로 인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최근 선진국들은 자국의 취약산업과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애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및 ‘특정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등 새로운 제도를 국내입법을 통해 도입해가면서 무역구제조치들을 매우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안타까운 것은 최근 선진국들이 중국을 표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제품을 대체하는 한국기업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7년 기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사 건수 중 철강관련 제품 및 세탁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등 14건이 중국과 동일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미·중 간 통상갈등이 지속되어 중국과 미국 상호간에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의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 모두 보복적인 동기로 반덤핑 조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아울러 최근 무역구제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산업피해 조사 신청건수

대비 판정율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취임이후 무역구제 및 국가안보에 근거하여 현재 조사 중인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발동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2016년 기준 7.9%에서 1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캐나다가 1%에서 8.8%로, 멕시코가 1.6%에서 4.5%로 증가되어, 실제 표적이 되는 중국이 9.2%에서 10.9%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¹⁵⁾ 기존 연구에서는 FTA가 비체약국에 비해 체약 당사국간의 반덤핑조치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협정문상에 반덤핑 조치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강화는 기존의 자유무역효과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실제로 인도는 1990년 이후 관세개혁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을 보호무역조치 강화로 해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증가에 따라 수출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고 고용이 감소되어 사회 전반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덤핑마진율이 더 높게 산정될수록 이러한 후생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또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조치강화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동일 품목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조치가 증가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16년간 17개 FTA를 통해 57개국과¹⁷⁾ 동시다발적인 FTA를 맺으며 자유무역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무력화 시킬 신보호무역주의 등장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¹⁸⁾

13) Lu, Y., Z. Tao, and Y. Zhang (2013), "How Do Exporters Respond to Antidumping Investigations?", HKIMR Working Paper No. 19/2013.

14) Bao, X. and L. D. Qiu (2011), "China's Antidumping More Retaliatory Than That of the US,"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 p374-389.

15) Bown, C. P. (2017), "17-21 Steel, Aluminum, Lumber, Solar: Trump's Stealth Trade Protection", PIIE Policy Paper.

16) Prusa, T. J. and R. The (2010), "Protection Reduction and Diversion: PTAs and the Incidence of Antidumping Disputes," NBER working paper 1627.

17) 한-영 FTA를 포함한 수치임.

18) 1995년부터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438개이며, 이중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인도(73건, 16.7%), 미국(54건, 12.3%), 중국(42건, 9.6%), 호주(37건, 8.4%), 유럽연합(31건, 7.1%) 등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한 상위 5개국이다.

03

정책연구

- 1. 반덤핑조사 종료재심(3차 이상)시 35
판정사례 연구
- 2. 덤핑방지조치시 국내 산업에 53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반덤핑조사 종료재심(3차 이상)시 판정사례 연구

1. 서론

WTO반덤핑협정, 외국의 법령,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볼 때, 종료재심사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즉 관세부과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약은 없었습니다. 즉,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거나 종료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무기한동안 덤핑방지관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무기한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유무역증진이라는 WTO체제의 목적이나 국내소비자의 이익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동안에 국내산업의 상황이나 수출자의 상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실제 운영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2. 종료재심사 횟수 및 관세부과 기간

가.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 WTO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에 대한 제약과 종료재심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WTO체제가 성립됨에 따라 미국의 관세법에는 종료재심사 규정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일종의 경과규정으로서 1995년 1월 1일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사건(즉, WTO설립이전 관세부과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1998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 까지 종료재심사를 실시하여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지속여부를 판단하였고, 1995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와 경과규정에 따라 지속되는 것으로 결정된 덤핑방지관세에 대해서 매 5년마다 종료재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얼마동안 부과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2019년 9월 23일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사례(WTO성립이후인 1995.1.1. 이후의 사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동일자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건은 총 326건이며, 이에 대한 요약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개시	부과기간(연)	사례건수
1995.1.1이후	20~25	27
	15~20	61
	10~15	48
	5~10	40
	0~5	150
합계		326

- 주1. 미국은 하나의 품목에 여러 개의 수출국이 관여된 경우 해당 사례건수는 관련된 수출국의 수 만큼입니다(가령, 3개 수출국이 관련된 경우 3건으로 취급).
- 주2. 부과기간은 관세부과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종료재심사결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바, 관세부과일로부터 위 자료 기준일인 2019년 9월23일까지로 계산한다면 부과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주3. 상기 자료는 USITC의 '19.9.23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2019년 9월 30일에 USITC홈페이지로부터 획득한 자료입니다), 부과기간이 5년 미만인 사례는 최근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향후에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주4. 부과기간이 20~25년인 사례 27건 중 8건은 4차 종료재심사를 실시하여 관세가 연장된 건이며, 나머지는 3차 종료재심사를 실시한 후 관세부과가 연장된 건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즉, 종료재심사 횟수)이 USITC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9.9.23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례 중 30년을 넘어서까지 부과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에 대해서는 USITC는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참고로 동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품목	수출국	사건번호	과세부과 기간(연)
1	Light-walled rectangular tube	Taiwan	701-TA-410	30.5
2	Brass sheet & strip	Japan	701-TA-379	31.1
3	Tapered roller bearings	China	701-TA-344	32.3
4	Brass sheet & strip	France	701-TA-313	32.6
5	Brass sheet & strip	Italy	701-TA-314	32.6
6	Brass sheet & strip	Germany	701-TA-317	32.6
7	Carbon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Japan	701-TA-309	32.6
8	Carbon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Brazil	701-TA-308	32.8
9	Carbon steel butt-weld pipe fittings	Taiwan	701-TA-310	32.8
10	Porcelain-on-steel cooking ware	China	701-TA-298	32.8
11	Petroleum wax candles	China	701-TA-282	33.1
12	Raw in-shell pistachios	Iran	701-TA-287	33.2
13	Welded carbon steel pipe	Turkey	701-TA-273	33.4
14	Welded carbon steel pipe	India	701-TA-271	33.4
15	Iron construction castings	Brazil	701-TA-262	33.4
16	Iron construction castings	China	701-TA-265	33.4
17	Welded carbon steel pipe	Thailand	701-TA-252	33.6
18	Iron construction castings	Canada	701-TA-263	33.6
19	Barium chloride	China	701-TA-149	35.0
20	Small diameter carbon steel pipe	Taiwan	701-TA-132	35.4
21	Chloropicrin	China	701-TA-130	35.5
22	Potassium permanganate	China	701-TA-125	35.7
23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Japan	AA1921-188	40.8
24	Pressure sensitive plastic tape	Italy	AA1921-167	42.0

- 주1. 사건번호가 701로 시작하는 것은 1930년 관세법에 근거한 사건이며, 사건번호가 AA1921로 시작하는 것은 1921년 관세법에 의한 것입니다.
- 주2. 부과기간은 관세부과시점부터 가장 최근의 종료재심사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2019년 9월23일까지로 한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이상의 종료재심사(1995.1.1. 이후 조사개시된 것에 대한 것)에서 부정판정이 내려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결된 사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재심사회차	종결사유	사례건수	비고
4차	산업피해 부정	3	별첨사례 참조
	국내산업 미응답	1	
	소계	4	
3차	산업피해 부정	3	별첨사례 참조
	국내산업 미응답	3	
	소계	6	
합계		10	

따라서, 3차이상의 종료재심사(1995.1.1. 이후 조사개시된 것에 대한 것)의 결과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재심사			사례건수	비율	
횟수차	결과	종결사유		회차기준	전체기준
4차	관세부과연장	－	8	66.7%	21.6%
	관세부과종료	산업피해 부정	3	25.0%	8.1%
		국내산업 미응답	1	8.3%	2.7%
		소계	4	33.3%	10.8%
	4차 소계		12	100.0%	32.4%
3차	관세부과연장	－	19	76.0%	51.4%
	관세부과종료	산업피해 부정	3	12.0%	8.1%
		국내산업 미응답	3	12.0%	8.1%
		소계	6	24.0%	16.2%
	3차 소계		25	100.0%	67.6%
합계			37		100.0%

나. EU 사례

EU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WTO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에 대한 제약과 종료재심사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므로, WTO의 성립으로 인하여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EU에 있어서, 덤핑방지관세가 얼마동안 부과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2018년과 2017년에 이루어진 종료재심사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품목	수출국	문서번호	관세부과 기간(연)	비고
1	Sodium gluconate	China	REGULATION (EU) 2017/94 of 19 January 2017	6.2	
2	Aluminium road wheels	China	REGULATION (EU) 2017/109 of 23 January 2017	6.2	
3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	China	REGULATION (EU) No 2017/325 of 24 February 2017	7.1	
4	Solar panels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modules and key components)	China	REGULATION (EU) 2017/367 of 1 March 2017	3.2	
5	Graphite electrode systems	India	REGULATION (EU) 2017/422 of 9 March 2017	12.5	
6	Okoume plywood	China	REGULATION (EU) 2017/648 of 5 April 2017	12.4	
7	Filament glass fibre products	China	REGULATION (EU) 2017/724 of 24 April 2017	6.1	
8	Tungsten carbide	China	REGULATION (EU) 2017/942 of 1 June 2017	26.7	
9	Stainless steel bars and rods	India	REGULATION (EU) 2017/1141 of 27 June 2017	6.2	
10	Melamine	China	REGULATION (EU) 2017/1171 of 30 June 2017	6.1	
11	Coated fine paper	China	REGULATION (EU) 2017/1188 of 3 July 2017	6.1	
12	Barium carbonate	China	REGULATION (EU) 2017/1759 of 27 September 2017	12.2	
13	Open mesh fabrics of glass fibres	China	REGULATION (EU) 2017/1993 of 6 November 2017	6.3	
14	Ceramic tiles	China	REGULATION (EU) 2017/2179 of 22 November 2017	6.2	
15	Hand pallet trucks and their essential parts	China	REGULATION (EU) 2017/2206 of 29 November 2017	12.4	
16	Trichloroisocyanuric acid	China	REGULATION (EU) 2017/2230 of 4 December 2017	12.2	
17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China	DECISION (EU) 2017/206 of 6 February 2017	12.5	주3
18	steel ropes and cables	China	REGULATION (EU) 2018/607 of 19 April 2018	18.7	

19	Tartaric acid	China	REGULATION (EU) 2018/921 of 28 June 2018	12.4	
20	Oxalic acid	China, India	REGULATION (EU) 2018/931 of 28 June 2018	6.2	
21	Seamless tubes and pipes	Russia,	REGULATION (EU) 2018/1469 of 1 October 2018	12.3	

주1. Regulation은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을 Decision은 Commission decision을 의미합니다.

주2. 부과기간은 관세부과시점부터 2018년과 2017년 각각 이루어진 종료재심사 판정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3. 동 사례는 신청인의 철회로 종료재심사가 수행되지 않아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었습니다.

상기 사례 중, Tungsten carbide 사례를 제외하고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즉, 위원회에서 판단 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이 장기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한편, Tungsten carbide 사례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덤핑방지관세가 1990년부터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공익(Union Interest)측면에서 논의되었는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연장하는 것이 EU의 공익에 반하지 않으며 EU공익에 반한다는 충분한 이유를 이해관계인이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익을 고려할 때에도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¹⁾

1) 5.10. Duration of measures

(230) Interested parties argued that the anti-dumping measures on the product under review are in force since 1990 and should therefore not be prolonged anymore.

(231) Under the conditions set by Article 11(2) of the basic Regulation, in case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injurious dumping is established and measures are not against the Union interest as a whole, such measures must be maintained. All conditions were met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Likewise, the parties concerned did not demonstrate any specific reason in terms of the overall Union interest that would speak against the measures. The Commission has therefore no other option than to impose anti-dumping measures. This argument is therefore rejected.

다. 캐나다 사례

캐나다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가 얼마동안 부과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019년 9월 6일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일자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건은 총 91건이며, 이중에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부과되어 오고 있는 사례는 1건이고 나머지 90건은 1995년 1월1일 이후부터 부과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요약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개시	부과기간(연)	사례건수
1994.12.31이전	40~	0
	30~40	1
	20~30	0
	소계	1
1995.1.1이후	20~25	6
	15~20	8
	10~15	9
	5~10	26
	0~5	41
	소계	90
합계		91

주1. 하나의 품목에 3개 수출국이 관련된 경우 3건으로 취급하였습니다(미국과 동일한 방식).

주2. 부과기간은 관세부과시점부터 2019.9.6.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주3. 상기 자료는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19.9.6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2019년 9월 30일에 CBSA홈페이지로부터 획득한 자료입니다), 부과기간이 5년 미만인 사례는 최근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향후에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다음의 사례(관세부과기간이 긴 사례를 선택)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나 조사당국이 제기한 어떠한 논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나, 그에 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순서	품목	수출국	사건번호	관세부과 기간(연)	비고
1	Whole Potatoes	United States	RR-2014-004	35.3	
2	Refined Sugar	United States	RR-2014-006	23.8	
3	Refined Sugar	Denmark	RR-2014-006	23.8	
4	Refined Sugar	Germany	RR-2014-006	23.8	
5	Refined Sugar	Netherlands	RR-2014-006	23.8	
6	Refined Sugar	United Kingdom	RR-2014-006	23.8	
7	Steel Plate 3	China	RR-2017-004	21.9	
8	Hot-rolled Carbon Steel Sheet	Brazil	RR-2015-002	18.1	
9	Hot-rolled Carbon Steel Sheet	China	RR-2015-002	18.1	
10	Hot-rolled Carbon Steel Sheet	Ukraine	RR-2015-002	18.1	
11	Hollow Structural Sections	South Korea	RR-2013-001	15.7	
12	Hollow Structural Sections	Turkey	RR-2013-001	15.7	
13	Steel Plate 5	Bulgaria	RR-2013-002	15.7	
14	Steel Plate 5	Czech Republic	RR-2013-002	15.7	
15	Steel Plate 5	Romania	RR-2013-002	15.7	

주1. 부과기간은 관세부과시점부터 2019.9.6.일까지를 기준하였습니다.

3. 종료재심 관세부과에 대한 제안

가. 수출자 등의 미대응

WTO반덤핑협정, 외국의 법령 및 사례에 의하면, 외국수출자가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미대응 자체가 피해의 재발이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당국이 재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피해의 지속가능성과 재발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미대응 했다고 해서 긍정판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자의 미대응과 재심사에서의 조사당국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즉, 피해의 재발이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때의 고려되는 여러 요소들은 신속재심사나 정상재심사간에 별다른 차이는 없고, 고려되는 요소들에 관한 정보나 자료의 원천이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하는지 아니면 새로 확보된 자료에 의하는지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수출자가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당국은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이용가능한 자료에는 국내생산자가 제출한 자료도 포함하고 있어서 수출자에게 사실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점을 미루어볼 때 수출자의 미대응은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가능성을 결과적으로는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수출자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19U.S.C, EU덤핑기본법, 캐나다의 특별수입조치법에서는 피해의 재발이나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무역위원회의 종료재심사에서 수출자 등이 참여를 하지 않고 국내산업만이 종료재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자료와 스스로 수집한 자료(관세청 자료) 및 기타의 자료(이전절차에 사용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의 재발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 피해의 지속가능성과 재발가능성

종료재심사는 미래에 나타날 사실에 대한 예측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측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즉, 피해의 지속가능성과 재발가능성 모두 덤핑방지관세가 없을 경우를 전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그러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는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피해가 지속되거나 피해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수출국의 생산이 종료재심사의 재심사대상기간 동안에는 지속되었으며 수출이 지속되어 피해가 계속되었으나 종료재심사를 마치는 시점에 수출국의 생산설비가 화재나 기타 이유(가령 전쟁)로 인해 파괴되어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더라도 피해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덤핑방지관세부과로 인하여 피해가 제거되더라도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고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재심사에서 현재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부과 중	관세부과 종결	비고
피해가 있음	피해의 지속가능성 있음	
	피해의 지속가능성 없음	
피해가 없음	피해의 재발가능성 있음	
	피해의 재발가능성 없음	

한편, 산업피해의 지속가능성과 재발가능성에 대해서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WTO반덤핑협정에서 두 기준은 “OR”로 연결되어 있어서, 둘 모두를 충족할 필요는 없고 둘 중의 하나만 충족하면 될 것인데, 이 경우 조사당국이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의 근거를 (i) 피해의 지속가능성, (ii) 피해의 재발가능성, (iii) 피해의 지속가능성과 재발가능성 모두 존재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피해의 지속가능성과 피해의 재발가능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USITC는 “likely to lead to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material injury”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의 재발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의 지속가능성 또는 재발가능성”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종료재심사의 목적이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었을 때를 가정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현재의 피해가 덤핑방지관세 종료 후에도 지속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피해의 지속)과 현재 피해가 없지만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된 후에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피해의 재발가능성)이 미래시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닌 가 추측됩니다. 즉, 어차피 미래에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피해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난 후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된 후에 피해가 재발할 것인지를 다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재심사대상기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한 결과 피해가 없는 상황은 피해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므로 피해의 재발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며, 재심사기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피해가 지속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해의 재발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EU의 접근법은 미국과는 다소 다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CITT는 “if the order were rescinded, the likely continuation or resumption of dumping from China would likely result in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 대한 판단보다는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된 후 산업피해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 피해가 지속되어온 피해인지 아니면 새로이 재발한 피해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접근법은 미국과는 유사하고 EU와는 다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지 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에 두는 것이 좋을 듯하나, 조사건마다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 피해에 대한 예측기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될 경우에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종료재심사인데, 그렇다면 피해가 언제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고려할 것인가 역시 이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때 발생할 피해까지 고려하여 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²⁾, 미국의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내에(within a reasonable foreseeable time)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 관련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된 후 12개월에서 24개월의 기간 동안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발할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예측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WTO반덤핑협정에서 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측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자구노력

WTO반덤핑협정, 외국의 법령 및 사례에 의하면, 덤핑방지관세 이후의 국내산업의 자구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종료재심사에서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산업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원가절감, 기술개발 등)해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피해의 지속가능성이나 재발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국내산업이 원가절감, 신기술개발과 같은 자구노력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피해의 지속가능성이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 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국내산업이 등한시하여 그 결과 수입품과 동종물품간의 기술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가격은 고려요소가 아닌 시장이라면, 덤핑수입품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2) EU의 sulphonic acid originating in India (EU) No 1347/2014)사례에서는 short-term 혹은 medium term 동안 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tungsten carbide, fused tungsten carbide and tungsten carbide simply mixed with metallic powder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U) 2017/942)에서는 short-term (1~2years)을 기준으로 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바 있으며, 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종료재심사에 있어서 국내산업이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국내산업보호의 효과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지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할 때에는 국내산업의 자구노력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를 전제한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국내산업의 자구노력에 대한 고려는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내산업의 자구노력은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 신속재심사(Expedited review)

미국은 이른 바 신속재심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캐나다와 EU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USITC가 종료재심사가 곧 이루어진다는 공고를 하고, 그 재심사공고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참여의향을 표시하면서 제출한 재심사공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충분하다고 USITC가 판단할 경우에는 정상재심사(Full review)를 실시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재심사(Expedited review)를 실시하게 되는데, 신속재심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와 그 외 원심당시의 자료, 직전종료재심사 자료, 기타의 자료 등과 같은 이용가능한 자료(facts available)에 근거하여 종료재심사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되며, 신속재심사를 할 경우에는 공청회나 질의서 발송과 같은 절차는 생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속재심사제도를 무역위원회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신속재심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관세법에 도입하여, 종료재심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종료재심사에 참여할 이해관계인들은 종료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보를 게재하여 초기단계에서 종료재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속재심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의 제도에서도 무역위원회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재심사 규정을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재심사개시일로부터 95일 이내에 신속재심사여부를 USITC가 결정하게 되고, 신속재심사를 실시할 경우 재심사개시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판단하여 상무성에 그 결과를 전달하게 됩니다(정상재심사의 경우 360일).

그리고, USITC는 종료재심사를 실시할 때마다 신속재심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해서 금번 재심사에서는 정상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재심사에서는 신속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ertain Circular Welded Pipe and Tube 사례에서 USITC는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종료재심사에서는 정상재심사를 실시하였고 네 번째 종료재심사에서는 신속재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 덤핑방지관세부와 종료 공고 및 재심사신청

1) 미국

상무성은 덤핑방지관세가 발행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30일이 되는 날까지 관보에 종료재심사가 개시된다는 점과 이해관계인이 필요정보를 제공하면서 동 재심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와 피해의 재발이나 지속가능성 및 기타사항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하게 됩니다(19U.S.C.§1675(c)(2)³⁾). 이와 동시에 USITC도 종료재심사를 개시한다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심사개시공고에 대해서, 국내산업과 관련 이해관계인(가령, 노동조합, 협회 등)이

3) Notice of initiation of review Not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date described in paragraph (1),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publish in the Federal Register a notice of initiation of a review under this subsection and request that interested parties submit—

(A) a statement expressing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review by providing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nd the Commission,

(B) a statement regarding the likely effects of revocation of the order or termination of the suspended investigation, and

(C) such other information or industry data as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may specify.

참여의향을 표시하지 않으면 상무성은 덤핑방지관세를 종결시키게 됩니다(19U.S.C.§1675(c)(3)⁴⁾).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산 저농축우라늄 덤핑방지관세부과사례에서 국내생산자들이 재심사개시공고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2019년 3월 15일)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종료재심사는 참여자의 성격과 자료의 수집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속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과, 종료재심사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 응할 경우 재심사를 개시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국내산업이 종료재심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됩니다.

2) EU

종료재심사는 EU조사당국의 직권으로 종료재심사를 실시할 수가 있고, 또한 국내산업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종료재심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EU조사당국은 덤핑방지관세의 종결시점을 관보(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에 게재하여 덤핑방지관세가 종결되는 시점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재심사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EU덤핑기본법 Article 11.2⁵⁾), 만일 신청기한까지 종료재심사에 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됩니다.

4) Responses to notice of initiation

(A) No response

If no interested party responds to the notice of initiation under this subsectio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shall issue a final determination, within 90 days after the initiation of a review, revoking the order or terminating the suspended investigation to which such notice relates.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n interested party means a party described in section 1677(9)(C), (D), (E), (F), or (G) of this title.

(B) Inadequate response

If interested parties provide inadequate responses to a notice of initiation, the administering authority, within 120 days after the initiation of the review, or the Commission, within 150 days after such initiation, may issue, without further investigation, a final determination based on the fact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section 1677e of this title.

5) A notice of impending expiry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t an appropriate time in the final year of the period of application of the measures as defined in this paragraph. Thereafter, the Union producers shall, no later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five-year period, be entitled to lodge a review request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subparagraph. A notice announcing the actual expiry of measures pursuant to this paragraph shall also be published.

EU의 경우에도 자국법에 직권재심사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의 덤핑방지관세의 연장요청에 근거하여 종료재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에 중국, 필리핀, 대만산 스테인레스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1월 8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심사요청이 없어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캐나다

CITT는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관보에 게재(2개월 이전)하게 되고, 관련 국내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여, 만일 종료재심사 개시에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종료재심사를 개시하고 그 개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게 됩니다(특별수입조치법 76.03(2), Expiry review guidelines page 3). 종료재심사 개시와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재심사가 개시되지 않아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 됩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관련 법률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집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덤핑방지관세의 종료에 관한 사실을 게재한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중국산 침대제품에 대해 국내생산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재심사개시를 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덤핑방지관세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캐나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미국, EU도 포함)와 마찬가지로, 종료재심사에서 국내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바, 국내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종료재심사가 개시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어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는 종결될 것입니다.

4)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종료가 임박한다는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즉,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종료시점을 이미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료시점을 공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EU 및 캐나다의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기 않기 때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5년이 되는 시점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종결이나 종료재심사개시를 정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부과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종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산업피해구제수준의 고려

미국이나 캐나다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료재심사에서도 산업피해구제수준의 고려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한편, EU의 경우 원심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종료재심사에서는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연구

덤핑방지조치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III 무역투자연구원
Institute for
Trade & Investment

1. 공익 조사절차 법제화 방안

가. 반덤핑 조치 부과 전, 공익 보호 수단으로 도입

1) 의의

‘공익’은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산업 사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과,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향 을 받는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공익 조항’은 이러한 영향을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고려하는 것이므로, 우리 반덤핑법에 공익 조항을 반영 시,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관련 규정에 공익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관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개정 제안

우리 반덤핑법에 공익 조항을 반영 시,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관련 규정에 공익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법 규정은, 관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가 있다.

① 관세법 제52조

관세법 제52조 제2항은 “...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이를 조사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라고 하여, 개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시가 ‘공익’적 고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면, “...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공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여 ‘공익’을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0항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여, 덤프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외의 조사절차와 관련해서는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해석으로 공익 조사를 위한 절차도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 조사 절차를 고시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면, “법 제52조 제2항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로 개정하여, 공익 개념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해석원칙이 확립된 법 제52조 제2항의 조사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로 고시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52조
현행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프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2. 30.]
개정 제안	1안: 개정 불필요. 밀줄부분의 해석상 공익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 2안: ② ...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공익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 20.>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현행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프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프사실 및 그로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프차액 또는 덤프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 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6.> 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 조사 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본 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 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 조사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에 따른 관보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 29., 2010. 3. 26., 2014. 3. 5.> ⑧ 삭제 <2014. 3. 5.> ⑨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3. 27.>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프방지관세부과 2.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3. 26.)
개정 제안	1안: 개정 불필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0항 밀줄 부분의 해석상 공익 개념이 포함된 관세법 제52조 제2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 2안: ⑩ 법 제52조 제2항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3. 26.>

나. 광범위한 비례성의 원칙을 반영한 공익 조항 도입

1) 의의

반덤핑 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공익은, 반덤핑 조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감소된 세액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 반덤핑법에서 반덤핑 조치의 부과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이 반영된 관련 규정에 공익 조항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2) 관세법 제51조 개정 제안

우리 반덤핑법에서 반덤핑 조치의 부과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이 반영된 관련 규정에 공익 조항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법 규정은, 관세법 제51조가 있다.

우리 관세법 제51조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공익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익 개념을 보다 폭넓게 도입하고자 한다면, 비례성에 입각하여 덤핑 마진 또는 피해 마진 이하의 관세액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나, 공익적 고려를 통해 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개정 사항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공익 개념을 폭넓게 방영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하여 비례성의 원칙과 공익 개념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51조
현행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 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u>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 할 수 있다.</u>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전문개정 2010. 12. 30.]

개정 제안	1안: 개정 불필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u>추가하여 부과 할 수 있다.</u> ”고 규정하여 이미 공익 개념을 도입한 비례성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안: 공익 개념을 폭넓게 방영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u>상당하는금액 이하의 관세 (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u> ”로 개정
-------	--

다. 적법절차 원칙을 반영한 공익 조항 도입

1) 의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의 공익 조항의 요구는 국내 산업 이외에 반덤핑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 이용자 및 소비자 등이 반덤핑 조사 절차에서 이해관계자로서 모든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우리 반덤핑법의 관련 규정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개정 제안

반덤핑 조사가 준사법적 행정절차이므로 이해당사자에게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법 규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가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국내산업 이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사용자 및 소비자를 명시하지는 않으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이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자 하면,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산업 사용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로 개정 할 수 있으나, 산업 사용자, 소비자 단체를 명시한 입법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현행	<p>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p> <p>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u>이해관계인에게</u>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화신을 위하여 질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p> <p>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p> <p>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p> <p>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29.></p> <p>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u>이해관계인이</u>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 29.></p> <p>⑥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u>이해관계인으로부터</u>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08. 2.29.></p> <p>⑦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u>이해관계인이</u>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와 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p> <p>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u>이해관계인으로</u>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 2. 29.></p>
개정 제안	<p>1안: 개정 불필요. 시행령 제64조는, “①…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u>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고 규정. 여기서 이해관계인에 산업사용자 및 소비자(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을 통해 실무에 반영</p> <p>2안: “①<u>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 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산업 사용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는</u> 이해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로 개정할 수 있으나, 산업 사용자, 소비자 단체를 명시한 국내법은 드물</p>

2. 공익 조사절차 운영 방안

가. 공익 조사 주제

EU는 덤핑, 피해, 인과관계 및 공익과 같은 반덤핑 절차의 모든 실질적인 요소가 동일한 기관에서 고려되는 단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EU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는데, 동 위원회는 조사의 개시와 종료, 잠정조치 부과와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최종적인 반덤핑 조치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기반을 두어 각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다.

이와는 달리, 캐나다의 경우에는 덤핑 및 피해 분석이 다른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분권화된 평가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CBSA가 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및 인과관계 문제는 CITT에 의해 고려된다.

또한, CITT는 피해에 대한 긍정적 판정의 경우, 직권 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을 고려할 권한이 있다. 비록 CITT가 직권으로 공익 조사를 고려 할 권한이 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다. 공익에 관한 CITT의 의견은 추가적으로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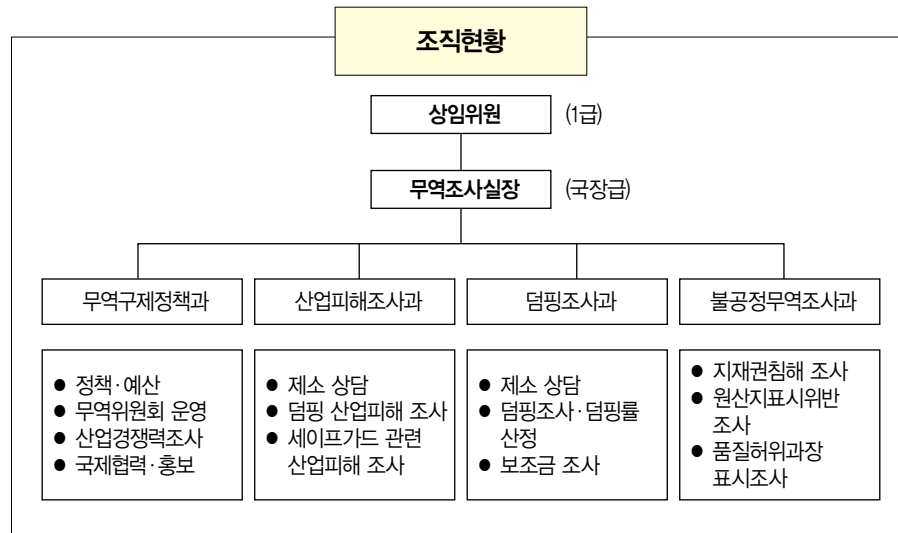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위원회가 덤핑 및 실질적 피해 사실을 조사 및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는 EU와 유사하게 반덤핑 절차의 모든 실질적인 요소가 동일한 기관, 즉, 무역위원회에 의해서 고려되는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 조항은 반덤핑 조치 부과 전에 공익 보호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반덤핑 절차의 모든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할 권한이 있는 무역위원회가 조사 및 판정, 건의 단계에서 공익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단일 시스템 하에서 반덤핑 절차를 운용하는 우리나라 법 시스템상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앞서 EU, 캐나다, 브라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해 공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도, 산업피해조사 권한이 있는 무역위원회를 통해 공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나. 공익 조사 조직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덤핑, 보조금, 지재권 침해 등의 존재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를 심의하여 판정하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4개과, 정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위원회 조직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반덤핑 조치의 최종 부과 전단계, 즉, 덤핑 및 실질적 피해의 조사단계에서 공익적 고려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상기 무역위원회 조직 현황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피해조사과에서 산업피해 조사 시, 공익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U의 경우, 우리의 무역위원회에 해당하는 무역방어국(Directorate H)은 24명~29명으로 구성된 5개의 Uni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Unit에서 공익 조사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의 경우, CITT 내에 25명으로 구성된 무역구제조사국(Trade Remedies Investigations Branch)에서 공익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의 경우, 42명으로 구성된 무역 방어 및 공익국(Subsecretariat of Commercial Defences and Public Interest)내에 공익 조사를 전담하는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CGIP(General Coordinator of Public Interest)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과별로 평균 8~9명으로 구성된 조사 인력이 추가적으로 공익 고려사항을 조사·검토하는 데는 과중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다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EU 및 한-중미 FTA 등 기체결 FTA에서 도입된 공익 고려 조항을 잘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반덤핑법에 공익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데는 다른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 담인력 확충, 예산 확보, 전문성 확보 등의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3. 공익조사 절차 업무 매뉴얼 마련 방안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반덤핑 조치 시 공익 고려 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외국의 공익 조항 관련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공익 조사의 목적과 유사하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수령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무역위원회는 대부분의 반덤핑 관세 조사 및 재심 절차에서 공급자, 국내 산업, 수입자 등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질의서를 발송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의 재량 규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기속적 규정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반덤핑법상 공익의 고려가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 이외의 산업 사용자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자료 제출·열람, 공청회 참석 등 절차적으로 산업 사용자 및 소비자 등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반덤핑 절차에서 보다 완전하고 명확하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등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공익에 대한 조사는 공익 조항을 국내법에 반영한 회원국의 국내법 아래 조사당국의 결정에 반영될 것이므로, 조사당국은 개별 조사에 절차적 규칙을 적용해야 하며, 공익에 대한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나, 조사당국이 그러한 의견을 조사당국의 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EU, 캐나다, 브라질 등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익 조사에 대한 명문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으로 현행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반덤핑 조치의 효과가, 다만 국내 생산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수입국 전체의 무역과 경제뿐만 아니라,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산업 사용자 및 소비자와, 수입국 및 수출국간의 무역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행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보다 명확한 법적인 근거 규정을 둬으로써 해석이나 업무 관행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 조항을 현행법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반덤핑법에 있어서의 공익의 개념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공익의 실제적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과 공익의 고려 단계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현행법에 잘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과 원리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 규범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그 안에 이러한 원리들이 잘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향후 한-EU FTA 등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익조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경우에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은 현행 법 구조와 같이 기재부장관이 그러한 공익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04

무역위원회 동향

1. 무역위원회 의결사항('20.7~'20.8월)	64
2. 최근 판정사례	73
1)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3. 대외활동 동향('20.7~9월)	78
1) 반덤핑조치 현장 방문	
2) 2020 하계 학술대회	
3)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예정)	



04 | 무역위원회 동향

무역위원회 동향

1. 무역위원회 의결사항('20.7~'20.8월)

제402차 무역위원회 ('20. 7. 16.(목))

【불공정무역행위】

- 1)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무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제403차 무역위원회 ('20. 8. 20.(목))

【반덤핑】

- 1)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 2)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 3)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 (공청회)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의 산업피해조사 건

【불공정무역행위】

- 1)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보고
- 2)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보고
- 3)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중지 여부 결정
- 4) 양말 편직기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2)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결정

[참고1] 제403차 무역위원회 안건 요약

① 중국산 합판 종료재심(2차) 개요

▣ 재심사 개요

- 요청인(요청일): (사)한국합판보드협회('19.9.19.)
- 피요청인: 산둥신강, 창해, 성저, 지엔타오, 뤼천, 난닝진룬 등 11개사
- 조사대상기간: 덤핑률 1년('18.7~'19.6월), 산업피해 3년6월('16~'19상)
- 덤핑방지관세율: 4.57~27.21%, 부과기간: '13.10.18.~현재(원심 3년, 재심 3년)

▣ 재심사대상물품

- 품명: 합판(Plywood)

*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하도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가 6mm 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다만, 두께 6mm이상, 너비 220mm이하, 길이 2,000mm이하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음

— 용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외장재, 인테리어용 등으로 사용

— 분류(HSK): 4412.31.4011, 4412.31.4019, 4412.31.4021, 4412.31.4029, 4412.31.5010, 4412.31.5090, 4412.31.6010, 4412.31.6090, 4412.31.7010, 4412.31.7090, 4412.33.4010, 4412.33.4020, 4412.33.5000, 4412.33.6000, 4412.33.7000, 4412.34.4010, 4412.34.4020, 4412.34.5000, 4412.34.6000, 4412.34.7000
(한-중 FTA 협정세율 10%)

▣ 국내시장규모('18년) : 약 9천억원 수준 / 약 170만m³

* 시장점유율: 국내산 약 14%, 수입산 약 86%(베트남산 약 40%, 말레이 약 9%, 중국 약 6%)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안)

공급자	연장조치 건의수준
웨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12%
난닝진룬 및 그 관계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난닝 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 푸수이 진룬(Guangxi Fushui Jinlun Wood Co., Ltd.)	3.98%
웨이강 웨이추앙 및 그 관계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웨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 웨이강 지에셴(Guigang Jiesheng Wood Co., Ltd.) - 광시 링산 웨이추앙(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	27.21%
뤄첸(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산둥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창해 및 그 관계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 -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27.21%
리안윤강안타이(Lian Yungang Yu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그 밖의 공급자	17.48%

□ 산업피해조사 경과

- 조사개시일('19.11.8), 공청회('20.6.18), 최종판정('20.8.20)

② 중국산 침엽수 합판 종료재심(1차) 개요

□ 재심사 개요

- **요청인(요청일):** (사)한국합판보드협회('19.9.9.)
- **피요청인:** 바이파, 룡위, 웨이강 동하이, 창해, 성저, 진허, 자허
- **조사대상기간:** 덤핑률 1년('18.7~'19.6월), 산업피해 3년6월('16~'19상)
- **덤핑방지관세율:** 4.22~7.15%, 부과기간: '16.3.11.~현재(원심 4년)

□ 재심사대상물품

- **품명:** 침엽수 합판(Coniferous Wood Plywood)

* 인접 단판의 섬유 방향이 서로 교차(직교 포함)하도록 3매 이상을 적층·접착시킨 두께 6mm 이상의 후판(厚板)으로,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것)로 이루어진 것. 다만, 두께 6mm이상, 너비 220mm이하, 길이 2,000mm이하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음

- 용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외장재, 인테리어용 등으로 사용
- 분류(HSK): 4412.39.9000, 4412.99.6100, 4412.99.9100(한·중 FTA 협정세율 7.5~10%)

□ 국내시장규모('18년) : 약 9천억원 수준 / 약 170만㎡

* 시장점유율 : 국내산 약 14%, 수입산 약 86%(베트남산 약 40%, 말련 약 9%, 중국 약 6%)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안)

공급자	연장조치 건의수준
웨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73%
진허 및 그 관계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5.33%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창해 및 그 관계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7.15%
룡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그 밖의 공급자	7.15%

□ 산업피해조사 경과

- 조사개시일('19.11.8), 공청회('20.6.18), 최종판정('20.8.20)

③ 말레이시아산 합판 종료재심사(3차) 개요

■ 재심사 개요

- **요청인(요청일):** (사)한국합판보드협회('19.9.19.)
- **피요청인:** 신양그룹, 수부르 티아사, 자야 티아사, 화센, 시노라
- **조사대상기간:** 덤핑률 1년('18.7~'19.6월), 산업피해 3년6월('16~'19상)
- **덤핑방지관세율:** 3.96~38.10%, 부과기간: '11.2.1.~현재(원심 3년, 재심(1차: 2년, 2차:3년))

■ 재심사대상물품

- **품명:** 합판(Plywood)
- *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하도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가 6mm 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다만, 두께 6mm이상, 너비 220mm이하, 길이 2,000mm이하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음
- 용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외장재, 인테리어용 등으로 사용
- 분류(HSK): 4412.31.4011, 4412.31.4019, 4412.31.4021, 4412.31.4029, 4412.31.5010, 4412.31.5090, 4412.31.6010, 4412.31.6090, 4412.31.7010, 4412.31.7090, 4412.33.4010, 4412.33.4020, 4412.33.5000, 4412.33.6000, 4412.33.7000, 4412.34.4010, 4412.34.4020, 4412.34.5000, 4412.34.6000, 4412.34.700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5%~10.4%)

■ 국내시장규모('18년) : 약 9천억원 수준 / 약 170만㎡

* 시장점유율은 국내산 14.2%, 수입산 약 85.7%(말레이시아산 8.9%)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안)

공급자	연장조치 건의수준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나.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다. 신양빈톨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라.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4.80%
2.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3.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4.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y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73%
5. 시노라(Sinora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6. 그 밖의 공급자	8.76%

■ 산업피해조사 경과

- 조사개시일('19.11.8), 공청회('20.6.18), 최종판정('20.8.20)

④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종료재심(4차) 개요

■ 재심사요청 개요

- **요청인(접수일):** 세아창원특수강(주), (주)세아특수강('19. 11. 28.)
- * 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현대회계법인
- **피요청인:** (일본) 산요 등 3개사, (인도) 비라즈 등 7개사, (스페인) 아세리눅스 등 2개사
- * (수입자) (주)한화, 세경금속(주) 등, (수요자) (주)티플렉스, (주)명진금속 등
- **현재 반덤핑관세율:** 15.39% (인도 비라즈사: 3.56%)

■ 재심사요청물품

- **품명:** 스테인리스스틸바
- *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 각강(square bar) · 육각강(hexa-gonal bar) · 평강(flat bar)인 제품

- 용도: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기타 산업설비
- 분류(HSK): 7222.11.0000, 7222.19.0000, 7222.20.0000, 7222.30.0000

■ 국내시장 규모('18년, 요청서기준): 약4천억원, 약10만톤

구 분	국내생산품	재심사요청물품	기타수입	합 계
금액(백만원)	208,261	80,339	101,752	390,352
물량(톤)	51,243	21,654	22,124	95,021
점유율(%)	53.9	22.8	23.3	100.0

■ 향후 계획

- 공청회 추가의견 접수('20.8.27), 최종판정('20.10월 예정)

⑤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신청 개요

- (신청인): 다니엘 웰링턴 에이비(Daniel Wellington AB)
- * 스웨덴 소재 시계 업체로 국내 상표권 소유자
- (피신청인): 국내기업 A
- (조사신청): '20. 7. 22.
- (조사대상물품): 손목시계
- (신청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손목시계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국내 판매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 신청인 등록상표 및 조사대상 물품

신청인 등록상표	조사대상물품
<p>다니엘 웰링턴</p> <p>상표등록번호 제40-1385869호</p>	
<p>DW</p> <p>Daniel Wellington</p> <p>국제등록번호 제1260501호</p>	
<p>DANIEL WELLINGTON</p> <p>국제등록번호 제1135742호</p> <p>지정상품: 제14류 시계, 시계줄 등</p>	
	신청인의 상표권이 표시된 손목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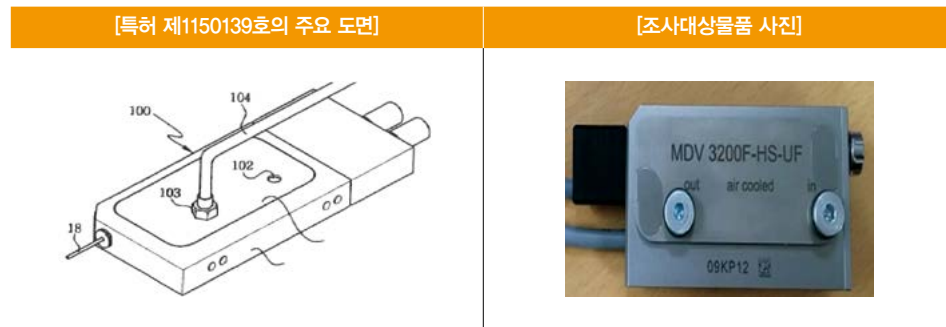
■ 향후계획

- 양 당사자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1.1월 이후)

⑥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조사신청 개요

- (신청인): (주)버메스코리아
- (피신청인): 국내기업 B
- (조사신청): '20. 7. 13.
- (조사대상물품): 제트밸브*(총 8개 모델)
- * 접착제 등의 액체를 정량으로 토출하는 장치로 '디스펜서'라고도 함
- (신청이유):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이 수입·판매
- * 냉각수단이 구비된 디스펜서(특허 제1150139호, 등록일: '12. 5. 18.)



* 도면부호: 18(태핏), 100(냉각수단), 102(공기배출구), 103(공기유입구), 104(공기이송호스)

▣ 향후계획

- 양 당사자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및 전문가 감정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1.1월 이후)

2. 최근 판정 사례 소개

1)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불공정무역조사과 나한균 조사관

무역위원회는 2020년 4월 16일 제39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 기업이 신청한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판정하고, 침해기업에 대해 수입·판매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동 판정 사례를 소개한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조사번호 : 구제 41201910호)

[조사배경]

신청인 A사는 버스 모양, 개구리 모양 등 창작 캐릭터 및 과목 이름을 펠트 소재의 시간표 틀에 탈·부착할 수 있는 제품인 ‘펠트 시간표’의 저작권 보유자이다

A사는 피신청인 B사와 C사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사대상물품인 ‘펠트 시간표’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물품은 펠트 시간표로 HS코드와 모델명은 다음과 같다.

HS코드 : 6307.90.9000(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의 그밖의 물품 - 기타 - 기타)

모델명 : 펠트 버스 시간표, 펠트 개구리 시간표

[그림] 신청인 제품과 조사대상물품 비교

구분	신청인 제품	조사대상물품
펠트 버스 시간표		
펠트 개구리 시간표		

[조사경과]

무역위원회는 2019년 10월 10일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이후 서면조사와 양 당사자간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감정을 진행하는 등 약 6개월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 조사대상물품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나) 조사대상물품이 수입·판매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가) 저작권 침해여부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저작권 존속 기간, 저작권 성립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령 및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 (저작권 존속 기간)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저작권 성립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그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 (저작권 침해 여부)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① 신청인의 저작권 유효 여부

신청인 A사의 대표는 ‘펠트 시간표’를 창작한 저작권자이고, 신청인 A사는 대표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았으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② 신청인 저작물의 저작권 성립 여부

신청인의 저작물인 ‘펠트 시간표’는 ‘시간표 부분’과 ‘캐릭터 부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 두 부분에 대한 저작권 성립여부를 각각 검토하였다. 먼저, ‘시간표 부분’은 가로로 요일로, 세로를 수업 시간으로 분리하여 나눈 칸에 국어, 수학 등의 과목을 표기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 이러한 형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시간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유사한 형식으로 표현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캐릭터 부분’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이 가미되는 부분으로 ‘버스 캐릭터’의 경우,

눈, 코, 입, 귀 등의 웃는 모습을 친근하게 표현하면서 실제 버스 모습 또는 기존에 알려진 버스 캐릭터와는 다른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개구리 캐릭터’의 경우도 실제 개구리 모습과 달리 다채로운 표정과 독특한 시선처리를 포함하여 귀엽게 표현하고 있어 저작물성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개성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버스 캐릭터 및 개구리 캐릭터’는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을 통해 시각적 특성을 추가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버스 및 개구리 캐릭터와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성이 부여됨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을 구비하였다.

③ 의거(依據)¹⁾ 관계 존재 여부

‘펠트 시간표’는 2013년 9월 경 신청인의 대표에 의해 창작되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품으로 제조되어 판매된 바 있다.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경 신청인은 펠트 개구리·버스 시간표 등을 제작하여 피신청인 C사에게 납품한 바 있고, 피신청인 C사는 납품받은 신청인의 제품을 기반으로 과목 이름의 글씨체 등을 변경하여 2017년 5월 경 중국 업체에 조사대상물품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바, 신청인의 저작권과 조사대상물품간에는 의거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실질적 유사성

신청인의 ‘버스 및 개구리 캐릭터’와 조사대상물품의 캐릭터간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하여 본 바, ‘버스 캐릭터’는 눈, 코, 입, 얼굴의 위치나 모양 및 선 굵기가 매우 유사하고, 눈썹이 눈 위가 아닌 약간 코쪽의 동일한 곳에 위치하는 등 거의 동일·유사하였다. 또한 ‘개구리 캐릭터’도 시간표의 모서리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고, 팔과 다리를 뻗은 방향, 모양과 길이, 비율 등이 유사하고, 개구리의 표정과 눈동자의 시선 즉 바라보는 방향까지 거의 동일·유사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물품은 신청인의 창작성이 담겨있는 저작물의 거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저작물과 조사대상물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나)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 여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와 피신청인측이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여부를 확인한 바, 피신청인 C사는 조사대상물품을 2017년 5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피신청인 B사에게 판매하였으며, 피신청인 B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무역위원회 판정]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수입 및 판매한 피신청인 B, C의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피신청인들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하고, 피신청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의의]

이번 사건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점, 특히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일부 보완하여 새로이 제품을 제작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품에 포함되는 캐릭터 등이 본인들이 창작한 캐릭터가 아니라면 언제라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저작권 침해여부를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무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조사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과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

1) 의거(依據) :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저작물에 근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침해 저작물을 작성하였음을 의미

3. 대외활동 동향(20.7~9월)

① 반덤핑조치 현장 방문

- **목적** : 반덤핑조치 조치에 따른 효과 및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 **일시/장소** : '20. 7. 2.(목), 10:50~17:10 / (주)KCC 여주공장
- **참석자** :
(무역위)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 김종주 무역구제정책과 과장 외 2명
(업체) 이강희 이사, 공장장 등



② 2020 하계 학술대회

- **주제** : 무역구제제도 변화와 대응전략
- **일시/장소** : '20.7.7.(금), 9:00~12:00 / 서울대 국제대학원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구제학회
- **참석자** : 윤상흠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안덕근 무역구제학회 회장, 학계 및 법조계 무역구제 전문가

○ 주요내용 :

(제1부) 신보호주의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과제

사회: 조영진 교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발표 1]	“미 상무부 환율 상계관세 조사 - 방법론과 법적 함의” 이재민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최창환 교수 (단국대 무역학과)
[발표 1]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정인교 교수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토론	허윤 교수 (서강대 국제대학원)

(제2부) 무역구제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사회: 이재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패널토론	김종범 교수 (연세대 국제대학원)
	안재빈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운호 前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최낙균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③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예정)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접수기간 | 20.9.14(월) ~ 10.30(금)



공모주제 :
무역구제 관련 제도, 판정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및 활동
(제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등
(사례) 국내외 무역구제기관,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사례
(기타) 무역구제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활동

참가자격
무역구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 단독 또는 공동출전 *대학원과 연합 가능

행사일정
(접수기간) 2020.9.14(월) ~ 10.30(금), 총 7주
(심사기간) (예선) 2020.11.2(월) ~ 11.13(금), 8팀 선정
(최종) 2020.11.20(금) | 장소 개별 안내
(시상식) 2020.11.20(금) | 최종심사 후 개최

제출방법
접 수 처 : 홈페이지 제출 (www.무역구제공모전.com)
공모형식 : 영상(5분 이내), 시나리오(WP)
파일형식 : mp4, AVI 등
크 기 : 200mb 이하 HD급 이상(1280x720 픽셀 이상)

심사기준
정확성 및 이해도 : 30점 *무역구제 제도 관련 내용의 정확성
*무역구제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이해도
독창성과 창의성 : 30점 *주제와 관련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논리성 및 표현력 : 30점 *주제 및 내용의 논리적, 명확성, 간결성 구성
규격준수 : 10점 *제시된 공모형식 준수여부

시상내역

구 분	수상자	상 금	상 장
대 상	1 팀	3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최우수상	3 팀	각 200만원	무역위원회 위원장상 중기중앙회 회장상
우수상	4 팀	각 100만원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문의처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사무국 : 02.6000.2507

주 최  무역위원회
후 원  KBIZ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05

해외 무역구제 동향

1. 외국의 對한국 주요 무역구제 조사/조치 동향 82

2. 해외 주요국의 무역구제 동향 89



05 | 해외 무역구제 동향¹⁾

1. 외국의 對한국 무역구제 조사/조치 동향(2020.07.01.-09.30)

- 우리나라 2020년 2분기(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진행된 무역구제조사 및 조치 동향
- 2020년 3분기(2020.07.01.-2020.09.30.) : 한국기업에 대한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는 6건 (반덤핑 예비판정 1건, 반덤핑 조사중 4건, 상계관세 조사중 1건)

조사개시일	규제국가	품목명	규제내용
2020-07-09	베트남	액상과당 (High-Fructose Corn Syrup)	반덤핑 (조사중)
2020-07-13	오스트레일리아	구리관 (Copper tube)	반덤핑 (조사중)
2020-07-28	미국	무게목강관 (Seamless Carbon and Alloy Steel Standard, Line, and Pressure Pipe)	반덤핑 (조사중)
2020-07-28	미국	무게목강관 (Seamless Carbon and Alloy Steel Standard, Line, and Pressure Pipe)	상계관세 (조사중)
2020-07-28	말레이시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반덤핑 (조사중)
2020-08-25	파키스탄	황색무기크롬안료(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	반덤핑 (예비판정)

베트남	액상과당 (High-Fructose Corn Syrup) 반덤핑 조사중
-----	---

▣ 대상 HS코드 및 품목명

- 조사대상 품목 HS 코드는 1702.60.10, 1702.60.20이며,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액상 설탕

(영문 : High-Fructose Corn Syrup) 옥수수 설탕, 액상 설탕, HFCS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액상 설탕

▣ 조사 배경 및 경과

- 제소일은 2020년 5월 21일이며, 조사개시일은 2020년 7월 9일
-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한국 · 중국산 고과당 옥수수 시럽(high-fructose corn syrup, HFCS · 이하 액상과당, 인공감미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진행
- 설탕의 대체재로 탄산음료와 분유, 과자, 젤리, 물엿, 조미료 등 단맛이 나는 가공식품에 대부분 쓰임
- 국내 설탕업체인 선라제당(Son La Sugar), 람선사탕수수(Lam Son Sugar Cane), KCP베트남산업(KCP Vietnam Industries Limited), 켄터제당(Can Tho Sugar), MK제당베트남(MK Sugar Vietnam), 라응아제당(La Nga Sugar Cane & Sugar) 등 6개 업체
- 액상과당 수입량은 2017년 8만2000t에서 2018년 15만t, 2019년 19만t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손라슈가(Son La Sugar Joint Stock Company)와 KCP 베트남 인더스트리(KCP Vietnam Industries Limited)를 비롯해 6개 업체들(Lam Son Sugar Joint Stock Company, Can Tho Sugar Joint Stock Company, MK Sugar Vietnam Co., Ltd, La Nga Sugar Joint Stock Company)의 요청 (베트남 액상과당 생산량의 54.94%를 차지)
- 한국과 중국산 업체들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액상과당을 수출해 현지 산업이 심각한 피해 : 베트남 무역구제당국에 조사 요구서를 접수
- 한국산 액상과당에 40.02%, 중국산 제품에 36.09%의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

▣ 시사점

- 베트남 설탕산업은 지난 수년간 밀수 등 부정수입으로 부진에 빠져있음
- 1톤당 10만동(4.3달러) 수준으로 폭락한 사탕수수 가격에 농부들은 사탕수수 재배를 포기하는 등 고사 직전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 있음
- 응웬 쉐언 폭(Nguyen Xuan Phuc) 총리는 국내 설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법 및 관련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무역방어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

1)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KITA)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antidumping.kita.net>)의 정보를 발췌 및 정리.

오스트레일리아 구리관 (Copper tube) 반덤핑 조사중

해외 무역구제 동향

▣ 대상HS코드 및 품목명

- 조사대상 품목 HS 코드는 7411.10이며, 정제한 동제의 철강금속제품으로 공업용도(예: 조리용·가열용·증류용·정제용이나 증발용의 기기에 사용한다)를 가지며, 또 건축물에 있어서 가정용이나 일반용의 물이나 가스의 공급용에 사용, 구리합금의 콘덴서 튜브(condenser tube)는 내부식성(특히 해수)이 강하므로 선박과 발전소에 광범위하게 사용

▣ 조사 배경 및 경과

- 조사개시일 2020년 7월 13일
-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구리관(Copper tube)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 조사대상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리관에 해당, 중국산은 반덤핑+보조금지급 여부도 함께 진행
- 호주 동관 제조업체인 MM Kembla사의 신청
- 반덤핑위원회는 한국산 구리관 마진이 2%를 초과 (18.6~30.3%), 수입량도 호주전체 수입의 3%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조사개시 결정
- 2020년 5월까지 호주로 구리관 수출은 1,726톤으로 기록, 전체 수출의 11.2% 점함
- 2019년 5,829톤을 수출하여 15.6%, 2018년에는 5,483톤으로 약14% 점함
- 호주 구리관 수출의 주요 업체는 능원금속공업, 대진동관, 삼포산업, 부광금속 등이 있으며 능원금속공업이 가장 많이 수출

▣ 시사점

- 2014년 5만 5,735톤으로 최대실적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호주는

미국에 이은 동관 수출 2위국으로 향후 수입규제 조치가 실행되면 국내 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

- 구리관 반덤핑 여부 조사시 위원회는 2013년 캐나다 정부 반덤핑 규제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 필수
-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수입규제로 이어지고 과거 캐나다 사례처럼 실제 수입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

미국

무계목강관 (Seamless Carbon and Alloy Steel Standard, Line, and Pressure Pipe)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중

▣ 대상HS코드 및 품목명

- 조사대상 품목 HS 코드는 7304.19.10, 7304.19.50, 7304.31.60, 7304.39.00, 7304.51.50, 7304.59.60, 7304.59.80이며, 무계목강관은 용접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강관과는 달리 특수 공법으로 제조되어 이음새가 없는 강관으로 화학 플랜트, 원자력 항공기, 자동차 등의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임

▣ 조사 배경 및 경과

- 제소일은 2020년 7월 8일이며, 조사개시일은 2020년 7월 28일
-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체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상계관세 혐의 대상국가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 청구된 덤핑마진율은 한국119.07~132.16%, 체코48.18~49.42%, 러시아 30.31~246.31%, 우크라이나 40.36%
- 미국텍사스주 발루렉 스타(Vallourec Star)의 제소, 우리나라를 비롯한 러시아, 체코 등에서 생산한 무계목강관 제품이 불공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 후 자국산업 피해
- 조사대상 한국기업 : 일진제강, 한세, 휴스틸
- 2020년 8월 21일 미국 ITC는 한국 등 4개국에서 생산한 무계목강관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예비판정

■ 시사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제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된다면, 상무부는 상계관세 및 덤핑 마진율을 산정해 실제 관세가 부과 (최종판정은 2021년 3월 예정)
-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 차질에 따른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파키스탄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에 반덤핑 예비판정

■ 대상HS코드 및 품목명

- 조사대상 품목 HS 코드는 3206.2010, 황색무기크롬안료(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는 현지에서 페인트 및 잉크 제작, 플라스틱 및 가죽 제품 염색 등에 사용되는 원료

■ 조사 배경 및 경과

- 파키스탄 황색무기크롬안료 수입시장에서 인도 및 한국산 제품은 상위 1~2위의 점유율로 전체의 94%를 차지
- 파키스탄 현지 화학 원료 제조업체 Poplon Pakistan Private Limited사는 황색무기크롬안료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2개국인 인도 및 한국 기업의 덤핑으로 인해 현지 산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 2020년 1월 3일, Poplon Pakistan Private Limited 사는 황색무기크롬안료 제품의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 NTC)에 제출
- 2019/20 회계연도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1500만 달러로 현지 크롬 안료 시장에서는 약 30% 점유율을 차지
- 현지 황색무기크롬안료 시장 규모가 2018/19 회계연도 기준 약 220만 달러 수준이며 이 중 해외 수입액은 약 15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68%를 차지
- 파키스탄 연방세무위원회(Federal Board of Revenue, FBR)에서 발표한 2018/19 회계연도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2.91%의 점유율로 2위(약 20만 달러)를 차지

파키스탄 황색무기크롬안료 수입 동향

(단위: 달러, %)

연번	수입대상국	2017/2018	2018/2019		
			수입규모	점유율	증감률
1	인도	1,241,989	1,249,834	81.88	0.63
2	한국	155,549	197,060	12.91	26.69
3	태국	—	33,658	2.20	—
4	중국	73,242	25,393	1.66	-65.33
5	필리핀	7,071	13,361	0.88	88.95
6	독일	7,176	7,172	0.47	-0.06
총계		1,485,027	1,526,479	100	2.79

- 2020년 8월 25일 황색무기크롬안료 품목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
- 인도 및 한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현지 산업 피해가 인정돼 8월 25일부터 향후 4개월간 인도 및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 제품에 대해 각각 51.91%와 26.59%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2020년 2월 29일부로 덤핑 혐의 및 현지 산업 피해 조사를 개시
- 덤핑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현지 산업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지정

황색무기크롬안료 반덤핑 조사 진행 현황

품목명	품목분류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황색무기크롬안료 (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	화학	20.02.29	20.08.25	21.02.20 이전 (진행중)

- 파키스탄 정부는 덤핑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국 생산 업체들의 현금 흐름, 고용, 임금 수준, 영업이익 성장률, 투자 유치 금액 등의 요인 변화에 집중
- 최종 판정은 예비 판정 결과가 발표된 8월 25일부터 180일 뒤인 2021년 2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며, 덤핑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경우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가 일정기간 부과될 예정

▣ 시사점

- 예비판정 단계에서 한국산 제품에 26.69%의 관세가 부과돼 향후 수입 물량 감소가 예상
- 그러나 80% 이상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던 인도산 제품에 대해 한국산보다 높은 51.91%의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돼 오히려 유력한 경쟁제품이나 대체재인 한국산 제품에 반사적인 이득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반덤핑 최종 판정이 발표되기까지의 향후 4개월간 파키스탄 업체들의 움직임과 시장 변화 양상을 면밀히 주시 필요
-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적극적 : 2020년 8월 말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부과 중인 4건의 반덤핑 규제 중 3건이 화학품목이며 황색무기크롬안료를 포함해 관련 수입규제 조사가 진행 중인 2건도 모두 화학제품
- 만성적 무역적자 완화 및 관련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수입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

해외 무역구제 동향

2. 해외 주요국의 무역구제 동향 (2020.07.01.-2020.09.30.)

▣ 해외 주요국의 2020년 2분기(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진행된 무역구제조사 및 조치 동향

규제국	대상국	품목명	규제내용
일본	중국	인산염 클로로프로필 (TCP)	반덤핑 관세
미국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타이어 (tyres)	반덤핑 (조사계속)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정밀강관 (Precision pipe and tube steel)	반덤핑 (조사개시)
중국	미국	프로판올 (Propan-1-ol)	반보조금관세 (예비판정)

일본	중국산 인산염 클로로프로필(TCP)에 5년간 반덤핑 관세
----	---------------------------------

▣ 대상HS코드 및 품목명

- 조사대상 품목 HS 코드는 29199090이며, 주택과 건물에 건축단열재로 쓰는 폴리우레탄에 혼합하는 첨가물

▣ 조사 배경 및 경과

- 오사카 소재 다이하치(大八) 화학공업은 중국산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돼 팔리고 있다고 제소하면서 그간 반덤핑 조사가 진행
- 2018년 일본의 TCP 수요는 9000t에 달했으며 이중 70%를 중국에서 수입, TCP 가격은 일본 국내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
- 2020년 6월, 관세외환등 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는 중국산 TCP에 대한 조사에서 판명한 사실을 토대로 4개월 동안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도록 재무성에 건의

- 2020년 9월 8일, 관세외환등 심의회는 중국산 TCPP가 덤핑 판매되면서 일본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확인하는 조사보고서를 재무성에 제출
- 재무성 산하 관세외환등 심의회는 중국산 TCPP 반덤핑관세 관련 자문을 위탁받는데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동안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정

■ 시사점

- 건축단열재로 쓰는 폴리우레탄에 첨가하는 TCPP의 통상 관세율은 3.9%이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37.2%의 반덤핑관세를 얹어 징수

미국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타이어(tyres) 반덤핑 조사계속

■ 대상HS코드 및 품목명

- 조사대상 품목 HS 코드는 HS Code 4011101010, 4011101020, 4011101030, 4011101040, 4011101050, 4011101060, 4011101070, 4011105000, 4011201005, 4011205010, 4011901010, 4011901050, 4011902010, 4011902050, 4011908010, 4011908050, 8708704530, 8708704546, 8708704548, 8708704580, 8708706030, 8708706045, 8708706060, 승용차와 경트럭의 타이어(Of a kind used on motor cars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 조사 배경 및 경과

- 한국은 미국 수입 타이어 시장 점유율 3위, 태국(1위, 17%), 멕시코(2위, 12%), 한국(3위, 10%)
- 한국을 제외한 3개국(대만, 태국, 베트남)은 2019년 수입액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 한국은 2.22% 감소했으나 베트남은 23% 가까이 상승하며 10개국 중 최고의 증가율
-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대만·태국·베트남산 승용차·경트럭 타이어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판단

- 전미철강노동조합 (USW)은 한국 43~195%, 대만 21~116%, 태국 106~217.5%, 베트남 2~22%의 타이어 덤핑 마진을 보였다고 주장
-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지난 5월 미 상무부와 USITC에 한국을 비롯해 대만·태국·베트남산 승용차·경트럭 타이어(PVLT)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청원서를 제출
- 베트남은 통화 가치 절하에 따라 환율 상계관세로도 제소
- 2020년 11월9일 반덤핑관세를 결정할 예정

■ 시사점

- USW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타이어에는 현재 가격의 195%가 관세로 부과
- USW는 2015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류 제공에 있어 철저한 준비도 필수적

오스트레일리아

정밀강관 (Precision pipe and tube steel) 반덤핑 조사개시

■ 대상HS코드 및 품목명

- 조사대상 품목 HS 코드는 7306.30, 7306.50, 7306.61이며, 정제된 동제의 철강금속제품으로 7306.30, 7306.50은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판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된 것이며, 7306.61은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으로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 파이프(line pipe)·기름이나 가스 시추용으로 사용하는 종류

▣ 조사 배경 및 경과

- 조사 진행일은 2020년 10월 30일 예상
- 호주 제조기업 Orrcon Manufacturing Pty Ltd는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에 대한 정밀강판 반덤핑 조사를 호주 반덤핑 위원회에 신청
- Orrcon 자사 제품과 수입제품 모두 동일 유통망을 통해 시장에 판매, 품질과 특징면에서 큰 차이없이 수입 4개 국가 제품들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시장 점유율 증가로 인한 피해
- 2015년부터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 2016년 약 60%가량 시장이 커졌으며, Orrcon사의 판매량은 14% 성장에 그침,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들의 판매는 2배 가량 증가
- 조사진행 7월 20일이 코로나19로 인해 10월 30일로 연기

▣ 시사점

- 반덤핑 81건, 상계관세 13건으로 품목별로 철강 또는 금속에 대한 규제가 61건으로 가장 많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수입규제가 대다수
-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입규제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 뿐 아니라 호주와 중국간 관계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로 통상정책도 보호주의 강화와 추가적인 수입규제가 예상
-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내수경제 및 산업보호를 위한 철강 및 금속 제품에 대한 중장기적 반덤핑 규제가 우려
- 오스트레일리아가 그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에 집중하는 품목이 해당 품목에 집중되어 수입업체에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이 큼

중국

미국산 프로판올에 반보조금 관세 예비판정

▣ 대상HS코드 및 품목명

- 조사대상 품목 HS 코드는 2905.12.1000이며, 프로판올(Propan-1-ol (propyl alcohol) and

propan-2-ol (isopropyl alcohol))은 음식 포장재, 프린트 잉크의 용제 및 화장품, 향생제, 살충제 제조 등에 쓰임

▣ 조사 배경 및 경과

- 중국 상무부는 2020년 7월 18일 미국산 프로판올에 대해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 “미국산 프로판올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미국산 프로판올이 중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 후 반보조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 예비 반보조금 세율은 34.2%~37.7%로 중국 세관에 관련 세율에 따른 예치금을 지불해야 함

▣ 시사점

- 2020년 7월 18일 미국산 프로판올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예비 반덤핑 관세율은 254.4%~267.4%
- 중국 상무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와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힌 이상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호주

2020년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 배경 및 경과

- 미-중 갈등 뿐만 아니라 호주와 중국 간 관계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로 2020년 하반기 호주의 통상정책도 보호주의 강화와 추가적인 수입규제가 예상
- 내수 경제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및 금속 제품에 대한 중장기적 반덤핑 규제가 우려
- 2020년 6월 빅토리아주 상원위원이 수입 철강제품의 시장공급가가 호주 업체보다 낮으며 품질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
- 호주 농축산 산업에 대한 보호도 강화

- 중국은 호주 와인 최대 수입국으로 2019년 전체 수출 규모의 약 37%를 차지 → 수출길이 막히는데다 국내 코로나19 봉쇄로 외식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호주 농축산업계의 연쇄 피해가 예상

■ 시사점

- 호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업체에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
- 수입산 식품에 대한 검역 및 통관 강화 등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커짐
- 철강, 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호주 기업들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
-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위생 및 성분 함량 등 검역과 통관 절차 준수를 위해 철저히 대비
- 호주의 내수 수요 변화, 호주로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의 수출량 변화를 눈여겨 보면서 2020년 하반기 수입규제에 대비

인도

2020년 하반기 수입규제 전망

■ 배경 및 경과

- 인도정부는 중국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량을 줄이고 자국 제조업 부흥 목적으로 컬러TV 수입 가능 여부를 기존 '제한 없음'에서 '제한'으로 변경
- 인도 대외무역청(DGFT)은 CCTV, 셋톱박스 등을 포함한 약 12건의 텔레비전 완제품 수입을 제한
 -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9억4천만 달러 상당의 제품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태양열 셀 및 모듈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을 7월 30일부로 연장
 - 100여 개 제품은 인증 취득 및 품질 확인 과정을 강화할 예정 (자동차, 내구소비재, 제약, 통신, 화약, 농약 등)
- 관세 장벽 강화를 통해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자국 제조업 부흥과 더불어 시장 내 중국

배제를 가속화 할 것

■ 시사점

- 인도정부는 우회 수입 및 중국 위탁생산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규제 범위를 확대
 - 2020년 6월 인도정부는 자국 철강제조업체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과 한국,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
 - 2020년 8월 인도정부는 저품질 및 제3국 수입품의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해 FTA 적용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시행을 발표
- 전반적으로 수입을 규제하여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
- 우리 기업은 이러한 인도의 전략을 인지하고, 제조업 육성 과정에서의 다양한 협력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증가할 무역장벽에 대한 대비 및 직접 투자를 통한 인도내 생산전략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 필요

부록

1. 무역구제 통계('20. 8월말 기준)	98
1) 총괄	
2) 반덤핑 조사	
3) 세이프 가드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 전세계 무역구제 현황	104
3. 對韓 해외 수입규제 현황	106
4. 무역구제 이용방법	107
1) 무역구제 유형 및 조치사항	
2) 무역구제 절차	
3) 무역구제 신청방법 및 상담지원	



1. 무역구제 통계('20. 8월말 기준)

1) 총괄

구분 (단위:건)	'87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8	계
반 덤 핑	101	6	18	15	5	7	15	18	4	14	7	15	14	8	16	5	9	14	14	13	5	323 (222)
가 품 목	55	6	11	7	5	4	6	8	3	6	6	6	5	5	10	4	5	7	6	8	3	176 (126)
세이프 가드	31	1	1	-	-	-	-	-	-	-	-	-	-	1	-	-	-	-	-	-	-	34 (22)
불공정 무역행위	219	13	9	5	5	6	5	4	6	9	12	8	9	8	10	9	12	9	10	13	3	384 (136)

* 신청건수 중, ()안은 구제조치 건수

▣ (반덤핑) '87~'20.8월까지 총 176건(품목 기준)의 조사신청이 있었고, 이 중 126건(71.6%)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 품목별로는 화학(58건), 종이·목재(33건), 제철·금속(25건), 기계·전자(21건)분야에 집중, 국가별로는 중국(87건), 일본(55건), EU(32건), 미국(29건)順
- 현재 20개 품목(38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중이며, 7개 품목(9개국)에 대하여 조사 진행 중

▣ (세이프가드) '87~'20.8월까지 총 34건(품목 기준)이 제소되었고, 이 중 22건(64.7%)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94년 이전에 25건이 제소되었고(74%), WTO 출범('95) 이후에 9건(26%)이 제소
- 품목별로는 농·수산물 19건(55.8%)으로 가장 많고, 기계·화학제품 順

▣ (불공정무역행위) '87~'20.8월까지 총 384건의 조사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36건(35.4%)에 대해 수입·제조 금지 등 제재조치

- 유형별로는 **지재권 침해조사**(240건, 62.5%)가 가장 많고, 원산지 표시위반(76건, 19.8%), 수출입 질서저해(65건, 16.9%) 順
- 현재 6건에 대하여 조사 진행 중

2) 반덤핑 조사

① 연도별 신청 및 조사개시 현황

구 분 (단위: 건)			'87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8	계
반 덤 핑	전체*	신청	55	6	11	7	5	4	6	8	3	6	6	6	5	5	10	4	5	7	6	8	3	176 (126)
		조사 개시	49	5	11	7	5	4	6	8	3	6	5	6	5	5	10	4	5	7	6	7	3	167
	원심	신청	40	2	4	7	3	3	3	6	2	1	2	1	2	3	3	3	2	3	2	2	1	95 (64)
		조사 개시	37	2	4	7	3	3	3	6	2	1	2	1	2	3	3	3	2	3	2	2	—	91

* 당해연도 신청 기준, () 안은 조치건수

② 국가별 신청 현황

구분(단위:건)	중국	일본	미국	EU	대만	인니	인도	말련	러시아	싱가폴	태국	캐나다	기타	계
조사신청 (조사개시)	87 (83)	55 (51)	29 (27)	32 (31)	18 (17)	14 (12)	19 (19)	16 (15)	8 (8)	10 (9)	13 (11)	6 (6)	16 (14)	323 (303)
조사중	4	1	-	1	-	-	1	1	-	-	-	-	1	9
긍정 판정	조치중	11	5	2	4	2	1	4	2	-	1	3	-	38
	조치완료	55	38	18	13	12	6	11	8	5	7	4	5	184
기타 *	16	11	9	14	3	6	3	5	3	2	6	1	10	89

* 기타: 부정판정, 신청철회 및 신청기각 포함

③ 주요국가에 대한 연도별 반덤핑조사 신청 및 조사개시 현황

피소국 (단위:건)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8	계
중국	신청	27	3	1	2	4	7	1	4	3	4	4	1	8	2	2	4	4	3	3	87
	조사 개시	24	3	1	2	4	7	1	4	3	4	4	1	8	2	2	4	4	3	2	83
일본	신청	24	3	3	2	1	2	-	2	1	2	1	3	1	1	1	3	1	4	-	55
	조사 개시	20	3	3	2	1	2	-	2	1	2	1	3	1	1	1	3	1	3	1	51

미국	신청	15	2	-	1	3	1	1	1	-	1	1	1	-	1	-	-	-	29
	조사개시	13	2	-	1	3	1	1	1	-	1	1	1	-	1	-	-	-	27
EU	신청	19	4	-	-	-	1	-	1	-	-	1	-	-	1	1	2	-	32
	조사개시	18	4	-	-	-	1	-	1	-	-	1	-	-	1	1	1	1	31

④ 품목별 신청현황 및 조사개시 현황

구분(단위: 건)	화학	기계/전자	종이/목재	섬유	제철/금속	유리/도자	기타	계
조사신청	58	21	33	12	25	11	16	176
조사개시	58	18	31	12	24	11	13	167
조치 중	7	1	4	-	6	2	-	20

⑤ 반덤핑조사 진행 중인 件 : 9개 국가, 7품목

신청일 (제 소 자)	대상품목명 (피제소국)	품목	구분	조사 및 판정현황
'19.9.9. (사)한국합판보도협회	침엽수합판 (중국)	종이/ 목재	1차 재심	· '19.9.9. 기재부 접수 · '19.11.8 조사개시 공고 · '20.6.18 공청회 개최 · '20.8.20 최종판정(긍정)
'19.9.19. (사)한국합판보도협회	합판 (말레이시아)	종이/ 목재	3차 재심	· '19.9.19. 기재부 접수 · '19.11.8 조사개시 공고 · '20.6.18 공청회 개최 · '20.8.20 최종판정(긍정)
'19.9.19. (사)한국합판보도협회	합판 (중국)	종이/ 목재	2차 재심	· '19.9.19. 기재부 접수 · '19.11.8 조사개시 공고 · '20.6.18 공청회 개최 · '20.8.20 최종판정(긍정)
'19.9.27. (사)한국합판보도협회	합판 (베트남)	종이/ 목재	원심	· '19.9.27. 무역위 접수 · '19.12.3. 조사개시 공고 · '20.4.16. 예비판정 · '20.5.29. 기재부 잠정관세 부과 · '20.6.18. 공청회 개최
'19.11.28. 세아창원특수강(주), (주)세아특수강	스테인리스스틸바 (일본,인도,스페인)	제철/ 금속	4차 재심	· '19.11.28. 기재부 접수 · '20.1.23. 재심사개시 공고 · '20.8.20. 공청회 개최
'20.1.29.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H형강 (중국)	제철/ 금속	1차 재심	· '20.1.29. 기재부 접수 · '20.4.3. 재심사개시 공고

신청일 (제 소 자)	대상품목명 (피제소국)	품목	구분	조사 및 판정현황
'20.3.6. 제일씨앤피(주)	인쇄제판용평면모양 사진 플레이트 (옴셋 인쇄판) (중국)	기계/ 전자	1차 재심	· '20.3.6. 기재부 접수 · '20.5.4. 재심사개시 공고

* 중국, 인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20.7.20. 무역위 접수) 조사개시여부 검토중

⑥ 덤핑방지관세 부과중인 件 : 38개 국가, 20품목

품 목 명	품목	구분	대 상 국	조 치 내 용		
				관세율(%)	기간	부 과 기 간
에이치(H) 형강	제철/금속	원심	중국	28.23~32.72	5년	'15.7.30~'20.7.29
침엽수 합판	종이/목재	원심	중국	4.22~7.15	4년	'16.3.11~'20.3.10
부틸글리콜에테르	화학	원심	미국, 프랑스	20.10~25.00	5년	'16.12.6.~'21.12.5.
합판	종이/목재	2차재심	말레이시아	3.96~38.10	3년	'17.5.8.~'20.5.7
합판	종이/목재	재심	중국	4.57~27.21	3년	'17.5.8.~'20.5.7
스테인레스스틸바	제철/금속	3차재심	일본, 인도, 스페인	3.56~15.39	3년	'17.6.2~'20.6.1.
옴셋인쇄판	기계/전자	원심	중국	5.86~10.21	3년	'17.9.7~'20.9.6
페로실리코망간	제철/금속	원심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4.06~19.06	5년	'17.11.29~'22.11.28
PET필름	화학	원심	대만,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3.67~60.95	3년	'18.4.30~'21.4.29
도공인쇄용지	종이/목재	원심	일본, 중국, 핀란드	5.90~16.23	5년	'18.7.22~'23.7.21
아연도금철선	제철/금속	원심	중국	8.6	5년	'18.8.14~'23.8.13
에탄올아민	화학	재심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12.64~21.79	3년	'18.8.31.~'21.8.30.
플로트 판유리	유리/도자	3차재심	중국	12.04~36.01	3년	'18.8.31.~'21.8.30.
도자기질 타일	유리/도자	3차재심	중국	9.06~29.41	3년	'18.10.15.~'21.10.14.
스테인리스스틸바	제철/금속	원심	대만, 이탈리아	9.47~18.56	5년	'19.5.16.~'24.5.15.
초산에틸	화학	3차재심	중국, 일본, 싱가포르	4.73~30.18	3년	'19.7.9.~'22.7.8.
초산에틸	화학	재심	인도	8.56~19.84	3년	'19.7.9.~'22.7.8.

품 목 명	품목	구분	대 상 국	조 치 내 용		
				관세율(%)	기간	부 과 기 간
OPP필름	화학	재심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2.15~25.04	5년	'19.8.23~'24.8.22.
PET필름	화학	3차재심	중국, 인도	13.51~36.98	3년	'19.9.11.~'22.9.10.
스테인리스스틸후판	제철/금속	2차재심	일본	13.17	3년	'20.7.14.~'23.7.13.

*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기간 중 조치효력은 계속됨(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

3) 세이프가드

구분 (단위: 건)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 '12	'13	'14	'15	'16	'17	'18	'19	'20.8	계
접수	25	1	3	-	1	1	-	1	1	-	1	-	-	-	-	-	-	-	34
신청철회	7	-	-	-	-	-	-	-	-	-	1	-	-	-	-	-	-	-	8
조사불개시	1	-	-	-	-	-	-	-	1	-	-	-	-	-	-	-	-	-	2
긍정판정	16	1	1	1	-	1	1	1	-	-	-	-	-	-	-	-	-	-	22
부정판정	-	1	1	-	-	-	-	-	-	-	-	-	-	-	-	-	-	-	2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① 불공정행위별 신청현황 : 총 384건의 조사신청, 136건 제재조치

구분 (단위:건)	'87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8	계
지재권 침해	113	2	4	5	4	6	4	3	3	6	10	5	8	7	7	9	12	8	9	13	3	241
원산지 위반	48	6	4	-	1	-	-	1	2	3	2	3	1	-	3	-	-	1	1	-	-	76
허위·과장 표시	-	-	-	-	-	-	-	-	1	-	-	-	-	1	-	-	-	-	-	-	-	2
수출입 질서저해	58	5	1	-	-	-	1	-	-	-	-	-	-	-	-	-	-	-	-	-	-	65
계	219	13	9	5	5	6	5	4	6	9	12	8	9	8	10	9	12	9	10	13	3	384

② 지재권 유형별 신청현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계
74	4	121	17	17	8	241

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결과

제재	무혐의	관련기관 이첩	조사종결	조사중	계
136	105	40	97	6	384

④ 현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진행 중인 件 : 6건, 6개 품목

조사대상물품 (신청내용)		신청일	조사진행현황
신발	상표권침해	'19.10.23	· '19.11.25 조사개시 결정
폐렴구균단백 접합백신	특허권침해	'19.12.20	· '20.1.21 조사개시 결정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침해	'19.12.6	· '20.2.20 조사개시 결정
휴대폰 보호필름	특허권침해	'20.1.6	· '20.2.20 조사개시 결정
제트밸브	특허권침해	'20.7.13	· '20.8.20 조사개시 결정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20.7.22	· '20.8.20 조사개시 결정

2. 전세계 무역구제 현황 (WTO, '95~'19)

구 분 (단위: 건)		'95 ~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반덤핑	조사 개시	386	247	264	357	296	372	311	234	221	199	203	165	218	217	173	165	208	287	236	229	298	249	202	207	5,944
	조치	216	127	185	190	236	169	218	224	154	138	142	105	143	143	134	99	121	161	159	182	171	192	203	146	3,958
상계 관세	조사 개시	17	16	25	41	18	27	9	15	8	6	8	11	16	28	9	25	23	33	45	31	34	41	55	36	577
	조치	23	3	6	14	21	14	14	6	8	4	3	2	11	9	19	9	10	13	11	15	24	18	28	35	320
세이프 가드	조사 개시	7	3	10	15	25	12	34	15	14	7	13	8	10	25	20	12	24	18	23	17	11	8	16	30	377
	발동	1	3	5	5	7	9	14	15	6	6	7	5	6	10	4	11	6	8	11	11	6	9	7	13	185
계	조사 개시	410	266	299	413	339	411	354	264	243	212	224	184	244	270	202	202	255	338	304	277	343	298	273	273	6,898
	발동	240	133	196	209	264	192	246	245	168	148	152	112	160	162	157	119	137	182	181	208	201	219	238	194	4,463

① 반덤핑(WTO 통계, '95~'19)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비 고
제소국 (건수)	인도 (972)	미국 (728)	EU (521)	브라질 (418)	아르헨티나 (388)	호주 (351)	중국 (288)	캐나다 (247)	남아공 (234)	터키 (229)	한국 (152) 12위
피소국 (건수)	중국 (1392)	한국 (447)	대만 (315)	미국 (298)	인도 (241)	태국 (238)	일본 (230)	인니 (218)	러시아 (173)	말레이시아 (165)	-

② 상계관세(WTO 통계, '95~'19)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비 고
제소국 (건수)	미국 (260)	EU (86)	캐나다 (72)	호주 (31)	인도 (22)	중국 (13)	남아공 (13)	브라질 (12)	이집트 (12)	페루 (10)	한국 (0)
피소국 (건수)	중국 (169)	인도 (89)	한국 (31)	인니 (28)	터키 (21)	미국 (21)	태국 (20)	베트남 (17)	EU (15)	이탈리아 (15)	-

③ 세이프가드(WTO 통계, '95~'19)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비 고
제소국 (건수)	인도 (46)	인니 (34)	터키 (25)	칠레 (20)	요르단 (19)	우크라이나 (16)	필리핀 (15)	이집트 (14)	미국 (12)	모로코 (11)	한국 (4) 31위

3. 對韓 해외 수입규제 현황 (무역협회, '20.08.21. 기준)

▣ 총 규제건수 : 29개국, 225건 (조사중 61건)

규제 형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총계
	(AD)	(CVD)	(SG)	
총계(건)	166 (32)	10 (2)	49 (27)	225 (61)

* 전체건수 기준이며, ()은 전체건수 중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① 국가별 규제건수

- 미국 · 인도 · 터키 · 중국 · 캐나다, 5개국이 127건으로 총 규제의 56.4% 차지

국가	미국	인도	터키	중국	캐나다	인니	브라질	태국	호주	EU	기타
건수	46(9)	33(11)	18(4)	17(2)	13(1)	10(5)	8	8(3)	8(3)	7(1)	57(22)

* 전체건수 기준이며, ()은 전체건수 중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② 형태별 규제건수

- 반덤핑 166건, 상계관세 10건, 세이프가드 49건으로 반덤핑이 총 규제의 73.8% 차지

형태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건수	166 (32)	10 (2)	49 (27)

③ 품목별 규제건수

- 철강/금속(104건) · 화학(45건)이 총 규제의 66.2%(149건)를 차지

- 철강/금속은 미국 32건(30.8%), 화학은 인도 12건(26.7%)가 주도

품목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고무	섬유	전기전자	기타	합계
건수	104 (22)	46 (13)	23 (6)	16 (4)	11 (2)	25 (14)	225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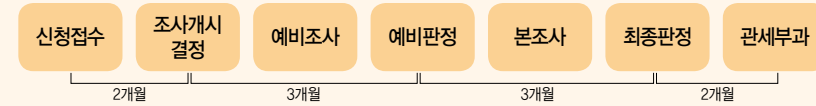
4. 무역구제 이용방법

1) 무역구제 유형 및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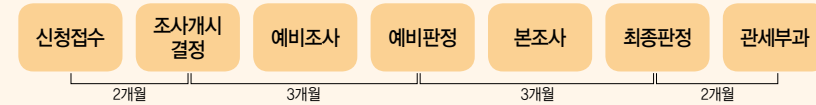
2) 무역구제 절차

덤핑방지관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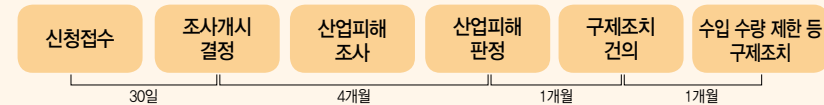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씩 연장 가능

상계관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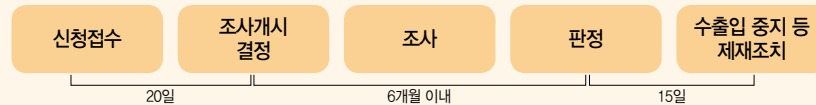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씩 연장 가능

세이프가드제도



* 산업피해조사 기간은 2개월 연장 가능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3) 무역구제 신청방법 및 상담지원

무역구제 신청방법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지재권 위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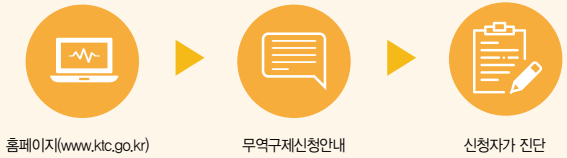
문의전화

구제제도	문의처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산업피해 조사과 044) 203-5861~9 덤핑 조사과 044) 203-5871~9
세이프가드제도	산업피해 조사과 044) 203-5861~9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불공정무역조사과 044) 203-5881~9

상담지원 제도

온라인 무역구제 자가진단

생산·판매 지표 등을 입력해 무역구제 신청 요건 및 자격을 진단하고 무역구제 신청 가능성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 서비스

기업의 상담 요청시 담당 조사관이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무역구제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 문의 : 산업피해조사과 044) 203-5861~9

무역구제 자원센터(전국 27개소)

무역구제 상담 안내 등 정보 제공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에서 확인 가능

경제단체(15개)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등(14개)

업종단체(11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제지공업협회, 한국화섬협회

육관기관(1개) 대한변리사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19개소)

■ 불공정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운영

신고센터 현황

신고센터명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신고센터명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무역관련지식재산관보호협회	www.e-tipa.org	02-3445-3763	한국베어링공업협회	www.kobema.or.kr	02-784-170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koipa.re.kr	02-2183-5888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www.kmdia.or.kr	070-7725-8730
한국의류산업협회	www.kaia.or.kr	02-528-0116	한국철강협회	www.kosa.or.kr	02-559-3558
한국기계산업진흥회	www.kowic.or.kr	02-422-6690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02-6000-5518
한국기계산업진흥회	www.koami.or.kr	02-369-7852	대한화학제품협회	www.kcia.or.kr	070-8709-8614
대한안경사협회	www.optic.or.kr	02-756-1001	한국완구협회	www.koreatoy.or.kr	031-348-8674
한국산업융재협회	www.kimta.kr	02-2275-4071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www.kocla.org	02-517-6450
한국온라인쇼핑협회	www.kdsa.or.kr	02-784-4114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www.gokea.org	02-6388-6072
한국완구공업진흥회	www.kotoy.or.kr	02-795-9505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02-3153-2712
한국판유리산업협회	www.flatglass.or.kr	02-3453-7991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무역구제조사를 신청한 중소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협회)에 한해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무역피해구제 지원사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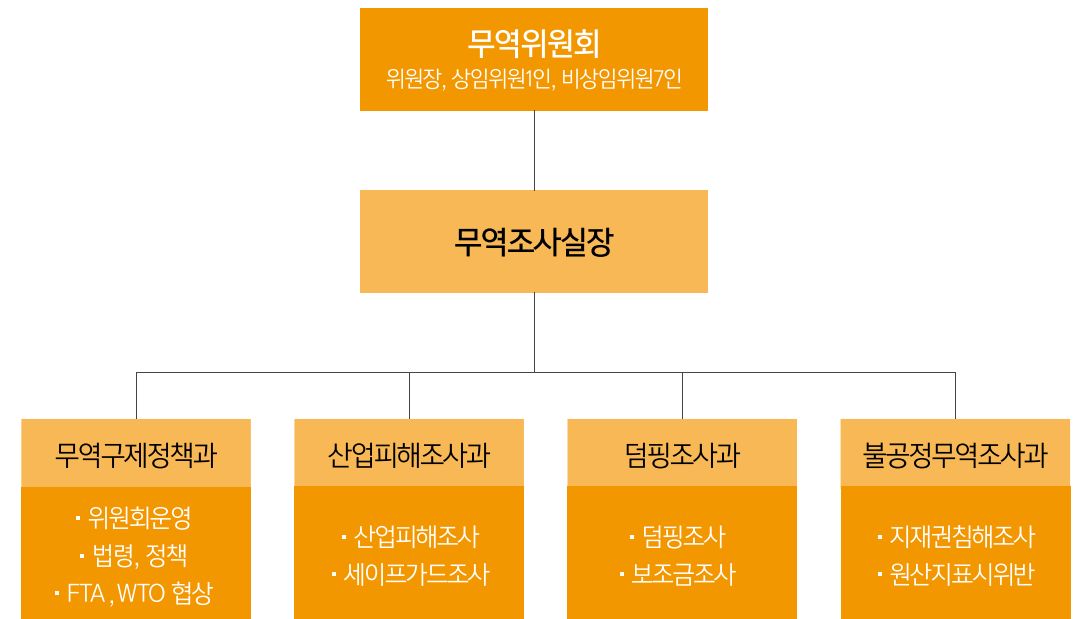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02)2124-3161



무역위원회 위원 현황

성명	사진	소속 및 경력
위원장 장 승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CC 국제중재법원 위원/중재인 • WTO 상소기구 위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상임위원 강 명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대변인, 통상협력국장 • 지역위 정책총괄국장 •駐일본 대사관 공사참사관
김 양 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 수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법무법인 민 구성원 변호사 • 특허청 심사관 • 산업부 사무관
김 중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KLP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김 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명예회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세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 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 스위스 World Trade Institute 연구원
강 진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경향신문 전문기자 • 경향신문 논설위원 • 경향신문 경제부, 정책사회부

☑️ 무역위원회 조직도



☎️ 연락처

대표전화	전 화 044) 203-5857 팩 스 044) 203-4816
무역조사실	전 화 044) 203-5857 팩 스 044) 203-4816
무역구제정책과	전 화 044) 203-5857 팩 스 044) 203-4815
산업피해조사과	전 화 044) 203-5867 팩 스 044) 203-4816
덤핑조사과	전 화 044) 203-5878 팩 스 044) 203-4816
불공정무역조사과	전 화 044) 203-5889 팩 스 044) 203-4816

주소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7층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2020년 9월 가을호 (통권 제 70호)

발행일	2020년 9월 25일
발행인	성 윤 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편집인	김 중 주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편집위원	고 정 오 무역구제학회
간사	이 은 자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주무관
편집실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전화) 044-203-5852 / (FAX) 044-203-4816 (홈페이지) www.ktc.go.kr
인쇄	(주)에스지지컴퍼니 (031-994-5663)
I S S N	1738-9461

Trade Remedy Review

Volume 70

25 September 2020

Publisher : Minister of MOTIE

Published b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Edited in Trade Remedy Policy Division, MOTIE

Tel : (82-44) 203-5852 / FAX : (82-44) 203-4816

Homepage : www.ktc.go.kr

[비 매 품]

본 무역구제지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자료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칼럼, 인터뷰, 기고문 등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